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김동근 주재홍 어하나 오운정 김병석 이호영
박찬운 서대현 심수빈 서상언 김광석 박윤선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

김동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진

김동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주재홍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

어한나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오윤정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경기연구원 연구진

김병석 경기연구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

이호영 경기연구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

인천연구원 연구진

박찬운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서대현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심수빈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진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센터장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연구위원

충북연구원 연구진

박윤선 충북연구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전문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방 자율성·책임성·현장 전문성 반영 위해 지방공공투자사업 재정 운용 제도 개선해야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 다양한 비효율 발생…제도 전반 개선 필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여러 문제점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의 다각적 검토와 14개 제도 개선안 제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등 총 4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유사 중복 제도 개선’,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총 5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총 2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총 3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1] 제도별 개선방안

제도	개선방안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1-1. 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1-2.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
	1-3.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1-4.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2-1.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2-2.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2-3.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2-4. 유사 중복 제도 개선
	2-5. 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 공개
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3-1.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3-2.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4.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4-1.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4-2.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
	4-3.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전문가·실무자 조사 결과, 업무체계와 제도운동을 우선과제로 도출

14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의 시급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과 법·제도 정비나 구조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단기 제도 개선방안은 행정 부담 완화, 절차 중복 해소, 심사기준의 실효성 제고 등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7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1순위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의 투자심사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가, 2순위로 정기적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이, 3순위로 전액 자체재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가 선정되었다. 4, 5순위로는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와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가, 6순위로는 재정 규모와 사업 특성에 따른 기준을 차등화하고 공사비 기준 및 간이 조사를 도입하는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이, 7순위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 조정’이 선정되었다.

[표 2] 단기 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도출

순위	관련 제도	내용
1순위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2순위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3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4순위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5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6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7순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 조정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는 제도 개선방안을 단계적·병행적 추진이 필요한 제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재정투입 주체와 심사주체의 일치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를 선정하였다. 둘째, 전 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셋째, 지방 사업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체계 마련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정량 중심 접근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을 선정하였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 격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의 지역낙후도 분석 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사전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전문성을 증강과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을 선정하였다.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이 연구는 지방공공투자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의 실질적 효과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관련 지침 개정 과정에서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제도의 법적·제도적 정합성 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 차원의 공동 제안서 및 정책건의서 작성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지역별 개선 요구를 집약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연구 결과를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환류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정책적 파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개선방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함으로써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의 실효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01 연구 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4
02 지방재정 관련 제도 현황	6
1_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6
2_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26
3_예비타당성조사 제도	39
4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53
0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62
1_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62
2_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구분 간소화	68
3_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액 제외	72
4_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78
04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84
1_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84
2_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90
3_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94
4_유사 중복 제도 개선	97
5_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101

05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06
1_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106
2_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110
06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4
1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114
2_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 투자심사 지원	121
3_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126
07 결론	130
1_제도 개선방안	130
2_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활용방안	134
참고문헌	137
Abstract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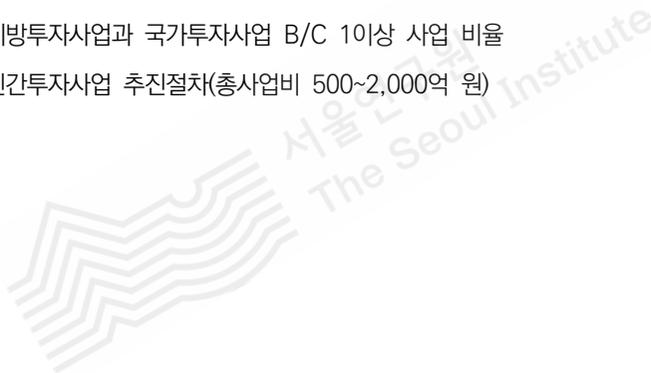
표 목차

[표 2-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6
[표 2-2] 지방재정 투자사업 규모·유형별 투자심사 대상 및 기관(전체)	10
[표 2-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12
[표 2-4] 중앙투자심사 일정	14
[표 2-5] 행사성 사업의 범위	15
[표 2-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었음에도 투자심사 의뢰가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19
[표 2-7] 국비 확정 전 투자심사 의뢰 허용 조건	20
[표 2-8] 사전 실무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	22
[표 2-9] 사전 실무심사 절차	22
[표 2-10] 현지 심사 시 중점 고려 사항	22
[표 2-11] 심사결과 구분 기준	24
[표 2-12] 타당성조사 근거 법령	27
[표 2-13] 타당성조사 정기 의뢰 시기	30
[표 2-14] 타당성조사 의뢰서 주요 작성사항	30
[표 2-15]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31
[표 2-16] 정책성 타당성 분석 주요 항목(예시)	36
[표 2-17]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37
[표 2-18] 시도별·사업비 규모별 투자심사 사업 현황(2022년 기준)	38
[표 2-1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40
[표 2-20]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45
[표 2-21] 정책성 분석의 주요 검토 내용	47
[표 2-22]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주요 검토 내용	48
[표 2-23] 정보화 분야 사업 기술성 분석의 주요 검토 내용	49

[표 2-24] AHP 수행 시 평가 가중치 산정 범위	52
[표 2-25] 사업 별도평가항목 유무에 따른 가중치 산정범위	52
[표 2-26]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예시)	53
[표 2-27]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시기 및 근거	54
[표 2-28]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근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의3)	55
[표 2-29]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별 주요 업무	58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반려 건	64
[표 3-2] 민간투자법 vs 지방재정법 비교	65
[표 3-3]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투자심사 간소화(예시)	66
[표 3-4]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개정(안): 투자심사 제외사업 관련	67
[표 3-5] 지방재정 투자사업 규모·유형별 투자심사 대상 및 기관(일부)	68
[표 3-6] 동일 공모사업 사업추진 주체에 따른 심사기관과 심사결과	70
[표 3-7] 법령별 총사업비 내 사업주체별 부지비 반영 여부	74
[표 3-8] 사업 유형별 공유재산가격 관련 논란	75
[표 3-9]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개정(안): 공유재산 관련	77
[표 3-10]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 사업이력 정보	79
[표 4-1]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단계별 수행기관	86
[표 4-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개정(안):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관련	88
[표 4-3]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하는 방법	90
[표 4-4]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공사비 비중이 낮은 사례	91
[표 4-5]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개정(안):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관련	92
[표 4-6]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개정(안): 유사 중복 제도 개선 관련	100
[표 6-1]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비 규모별 심사 주체	115
[표 6-2]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관리 조직 현황	116
[표 6-3]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개정(안): 실무심사 관련	118
[표 6-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개정(안): 심사안건 관련	119
[표 6-5] 「지방재정 투자심사 규칙」 개정(안) : 투자심사 관련	119
[표 6-6]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개정(안): 위원회 구성 관련	120
[표 7-1] 제도별 개선방안	130
[표 7-2] 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도출	132

그림 목차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업무절차	18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25
[그림 2-3]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체계	34
[그림 2-4]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 및 수행절차	42
[그림 2-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44
[그림 2-6]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구조	51
[그림 4-1] 지방투자사업과 국가투자사업 B/C 1이상 사업 비율	95
[그림 4-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총사업비 500~2,000억 원)	98



01

연구 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1. 연구 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 민선 지방자치 도입 이후 30여 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 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들은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2024년 7월),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
 - 제도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황
-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도 간 중복과 절차상의 불필요한 제도로 인해 사업 일정 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
 -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중복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지방재정법」의 사업추진 절차가 중첩
 -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약되고 사업 일정 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다양한 비효율이 발생
-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제도는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와 지방재정 자치권 확대 정책과도 상충
 -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와 규제가 여전히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지방시대 5대 전략 중 하나로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 변화는 미미
-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사 대상 확대에 따라 투자심사 전문성·일관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투자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법적 근거·전문 인력·예산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
 - 지방공공투자센터 간 역할과 역량이 상이하여,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역할 재정립 및 제도적 보완 필요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공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비효율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운용과 공공투자사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유할 필요
 -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_연구내용 및 방법

- 지방공공투자사업 관련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 체계가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 및 지방재정 자치권 확대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확인·분석
 -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상의 절차와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
 -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검토
 -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 검토 대상 제도에 관한 법령, 문헌 등을 분석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도출
 - 관련 법령, 정부 및 지자체 문헌, 기존 연구보고서,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별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검토
 - 제도별 정책 현황 및 사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진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협의 및 검토를 통해 관련 기관(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

02

지방재정 관련 제도 현황



- 1_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 2_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 3_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4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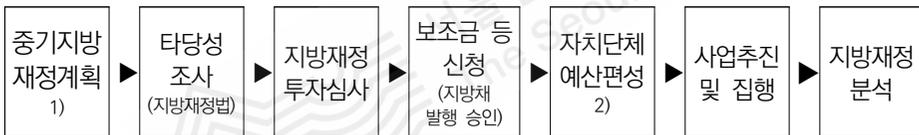
02. 지방재정 관련 제도 현황

1_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1)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요

-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된 제도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표 2-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 1)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재원이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추구
-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주요 목적은 국가·지방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데 있음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다음의 법령, 지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 지방자치단체별 「○○시(도) 재정운영 조례」, 「○○시(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 투자심사 대상 및 시기

(1)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개념 및 범위

① 대상사업의 개념 및 범위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포함되는 투자성 사업과 행사성 사업,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
 -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도 포함
- 신규 투자사업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다만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봄
-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 범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규정됨
 - (시·도)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5억 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시·군·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3억 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②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내용적 범위

-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단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 구조상 하나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함
 -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 내역 사업을 각각 별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인 단일사업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2개 이상의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이더라도 ① 각 세부사업 또

는 내역사업의 시설물 간 상호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이 있고 ②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 1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봄

- 동일 부지 내 세부·내역사업별 국비의 소관부처가 다르거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는지 여부는 투자심사의 대상인 단일사업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이 국가·민간·외국자본인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이 아니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가·민간 등 다른 주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③ 단계별 심사 구분

- 신규심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
 -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기본설계 제외 시 실시설계) 이전
- 재심사: 최초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공사 착공 후 심사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 각 단계에서 심사의뢰
- 재상정: 최초 심사 및 재심사 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자심사의뢰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

[표 2-2] 지방재정 투자사업 규모·유형별 투자심사 대상 및 기관(전체)

구 분	사업유형		심사 주체(기관)			
			자체심사	의뢰심사		
				시·도 (시도/시군구→행안부)	중앙 (시도/시군구→행안부)	
공 통	외국 자본 도입 사업		-	-	10억 원 이상	
광역 자치단체 (시·도)	이전 재원을 포함한 일반투자사업		40~300억 원	/	300억 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40~300억 원		300억 원 이상	
		일반투자사업	40억 원 이상		-	
	홍보관·행사성 사업		총액 5억 원 이상, 행사성 3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시·도 공동협력사업		40~500억 원			500억 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이전재원을 포함한 일반투자사업		20~60억 원 (대도시 200억 원 미만)	60~200억 원	200억 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20~60억 원	60억 원 이상	-	
		일반투자사업	20억 원 이상	-	-	
	홍보관·행사성 사업		총액 3억 원 이상, 행사성 1억 원 이상 ~총액 60억 원 행사성 3억 원 미만	총액 60억 원 행사성 3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시·도 공동협력사업		20~60억 원	60~500억 원 (대도시 200~500억 원)	500억 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20억 원 미만	20~50억 원	50억 원 이상	
재심사	<p>■ 재심사 기관: 지방재정 투자사업 총사업비 기준금액별 해당 심사기관</p> <p>■ 재심사 대상</p> <p>① 투자심의 후 4년간 미시행 또는 보류된 경우</p> <p>②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p> <p>- 당초 사업비가 500억 이상 사업은 아래산식 초과인 경우에 재심사</p> <p style="padding-left: 20px;">▶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 × 20/100} + 150</p> <p>- 물가변동, 보상비 증가분 제외. 단, 사업규모(부지면적, 연장, 연면적)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p> <p>③ 당초 전액 자체재원에서 재원계획이 변경으로 심사기관이 변경된 경우</p> <p>④ 당초 지방채 30% 이상 추가 발행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신규 지방채는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 인정하여 재심사 면제)</p> <p>⑤ 위치변경 (동일 읍·면·동 내 일부 위치변경 제외)</p>					

(2) 투자심사 제외 대상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개정 2020. 9. 1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시·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 지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사업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복합시설 제외)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를 개수 또는 보수하는 사업,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사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19-56호)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 공유재산, 용역비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
-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표 2-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구 분	사업명	관계법
제 외 사 업	1. 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
	2.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10호에서 명시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투자심사 제외 가능	
	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4. 발기반정리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5. 경지정리사업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
	6. 배수개선사업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
	7. 대기환경개선사업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관한 특별법」 제9조
	8.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12조제2항
	9.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도로법」 제12조제2항
	10.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11.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재생사업 (국가산업단지로 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2조제11호
	12.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수도법」 제4조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
	14.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5.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하수도법」 제5조	

②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 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 포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3) 심사의뢰 및 투자심사 시기

① 투자심사 의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사업기획 구상을 위한 사전용역 또는 사업계획 용역 등을 통해 사업목적, 규모,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등 구체화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시행 (단,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국비 보조 대상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의뢰

② 투자심사

-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심사 실시
- 다만 긴급히 국가정책사업을 시행하거나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에 한함

[표 2-4] 중앙투자심사 일정

구 분	시·도 의뢰심사 (시·군·구 → 시·도)	중앙의뢰심사 (시·도 → 행안부)	심사	결과통보
제1차	1월 15일까지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4월 중순
제2차	4월 15일까지	4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7월 중순
제3차	7월 15일까지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10월 중순



3)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사업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면 투자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단, 지출 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장려금)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될 경우 투자심사 실시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의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함
 - 부동산, 동산 취득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교체사업은 제외 (예시: 노후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 교체사업,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등)

* 동산이란,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에 의한 동산을 의미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공연·축제·문화행사 등 행사성 사업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는 포함하지 않음)
- 행사성 사업은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임시적·일회성 시설물·구조물 포함)와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장경비를 포함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표 2-5] 행사성 사업의 범위

① 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 공연·축제·문화 행사 ③ 위로·위문 행사 ④ 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 각종 체육대회 행사 ⑥ 교양강좌 ⑦ 각종기념행사 ⑧ 지자체주관 국제 행사 ⑨ 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3) 홍보관사업

- 영구·단독 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사업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보며 복합시설물의 경우에는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산정 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 자치단체 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
 - 복합시설물은 청사가 연면적의 25% 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단,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 청사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것은 신축으로 봄)
 -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봄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는 상급기관 의뢰심사(시·군·구 → 시·도, 시·도 → 중앙)를 하되, 심사기관은 총사업비 및 전액 자체재원 유무에 따라 구분

(5)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
 - 심사의뢰 사업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 신축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규정을 적용하며, 동법 제2조 다목의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은 일반투자사업에 해당함
 -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
-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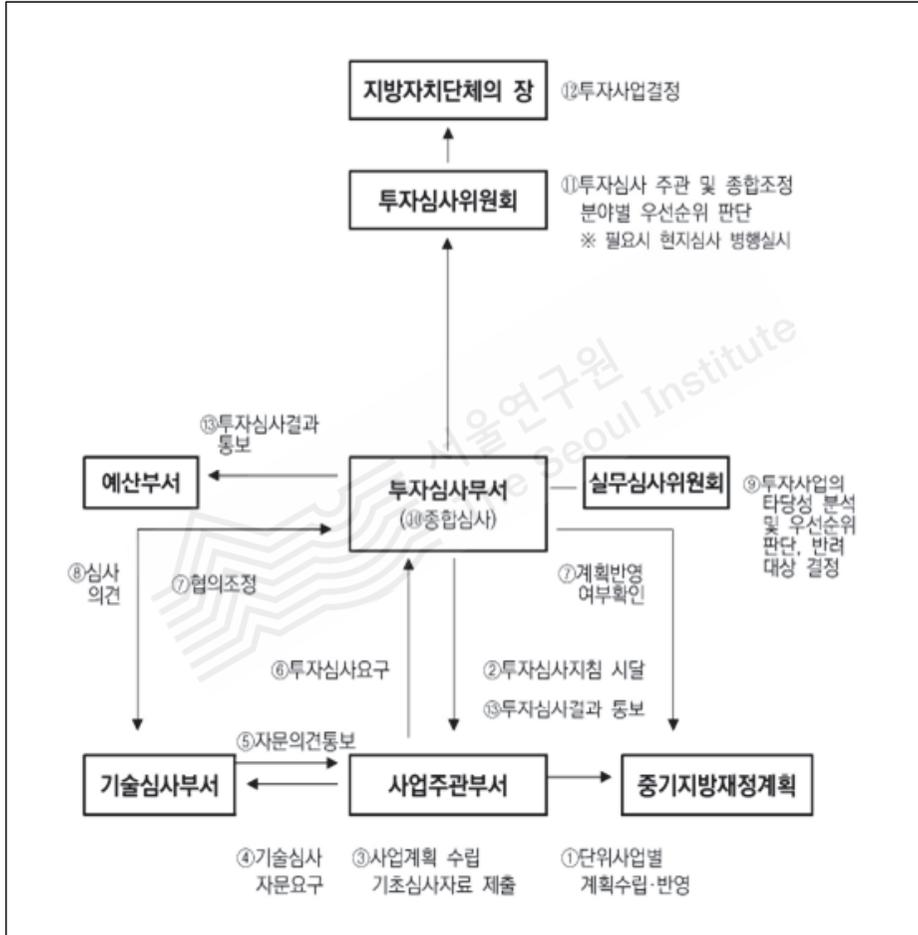
(6)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 보증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 예산 외 의무부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 확약(소위 책임분양)’, ‘토지 리턴제 확약’ 등과 같이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
-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4) 투자심사 절차

(1) 개요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사업이 속한 실·본부·국의 회계단위로 부여
- 개별사업 투자심사 시 서면심사와 함께 현지심사 병행 실시
- 사업비의 재원 및 성격에 따라 자체심사와 시 및 중앙 의뢰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 실시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업무절차

(2) 투자심사 사전절차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 투자심사는 원칙적으로 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의뢰해야 함
 -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완료된 이후 투자심사 의뢰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투자심사에 의뢰해야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심사 의뢰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11호)

[표 2-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었음에도 투자심사 의뢰가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후 국고보조사업(기초지자체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에 예측하지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 • 그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이 어려운 경우 |
|---|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③ 지방재정영향평가

- 시·도 30억 원, 시·군·구 10억 원 이상인 사업,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이행한 후 투자심사 의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

④ 타당성조사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등을 이행한 후 투자심사 의뢰
 - 단,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⑤ 국비 및 시·도비 확보

-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 모두 원칙적으로 각각 국비 및 시·도비가 확보된 이후에 투자심사에 의뢰해야 함
 - (국비 확보) 소관 중앙부처가 해당 사업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자체의 해당 사업에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된 경우를 의미
 - 국고보조사업은 [표 2-7]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국비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투자심사 의뢰가 가능함

[표 2-7] 국비 확정 전 투자심사 의뢰 허용 조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으로서 국비 신청을 위해 투자심사가 사전 행정절차인 사업 • 정부예산안에 지원대상 지자체가 명시된 국고보조사업 |
|--|

- (시·도비 확보) 연차별 지원금액의 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해당 시·도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 심사 단계

① 기초심사자료 작성(사업주관 부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확인·조치, 타당성조사 이행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정확 여부를 확인·보완
-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 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자체 투자방침을 정하여 실·국·본부로 제출(투자우선순위 부여)
 - 검토사항 : 사업규모, 공법 등 기술사항,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시설운영계획(관리비, 운영비 등) 등 투자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

② 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 실·국·본부에서는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심사 후 심사부서에 일괄 제출
 - 심사부서에서는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투자심사가 곤란한 경우 심사의뢰서를 반려 조치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은 반려 조치(「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투자심사 의뢰서
 - 별지서식 제1호에 맞게 육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
 -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단가 등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적시하고, 자료를 인용할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증명해야 함

③ 사전 실무심사

- 기초심사 자료작성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하여 사전 실무심사를 실시

[표 2-8] 사전 실무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

-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사업시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자원조달 가능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기타사업의 타당성·적정성 등

[표 2-9] 사전 실무심사 절차

- 주관: 투자심사 담당부서
- 심사자: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심사부서,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적의 선정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의뢰서, 자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시·도비 지원 검토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심사시기: 기초심사 자료작성이 완료되고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이전
- 심사결과 조치: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자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완 없이 재심사 의뢰한 경우, 의뢰서상 통계자료 왜곡, 누락, 허위자료 작성, 타당성 조사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부서에 반려 또는 보완 조치

- 투자사업 중 아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현지 심사를 병행 실시하여 사업추진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
 - 사업현장이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경우
 -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결되는 경우
 - 기타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지 심사는 투자심사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등이 참여

[표 2-10] 현지 심사 시 중점 고려 사항

- 사업대상지 위치의 적정성
- 사업규모,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 대상지의 지장물 등 추진 저해요인
- 사업의 주민수혜여부, 주변 동향 및 민원발생 가능여부
- 기타 사업의 필요성, 합리성, 연계성 여부

④ 자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투자심사위원회는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재정담당 및 도시계획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1/4 이내로 함
 -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 현직 지방의회의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
 -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위원이라는 사실 및 투자심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위원회 심사 전에 안건을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에게 배분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1건의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해야 함
 - 심사결과의 최종 결정은 가급적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 가능
 - 심사위원들이 참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별도 제공
- 위원회 심사 시 사업주관부서에서 참석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제공
 - 심사결과의 최종 결정은 가급적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 가능
 - 다만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이 표준 설계 면적을 초과한 경우 재검토(규모 축소 후 재상정)
 - 심사 안건이 소규모(10건 내외)이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 가능
 - 주민피해 우려사업, 주민생활 밀접지역 사업 등 투자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현지 심사 실시
-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

[표 2-11] 심사결과 구분 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네 가지 구분으로 심사결과 제시	
① 적	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자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자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자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	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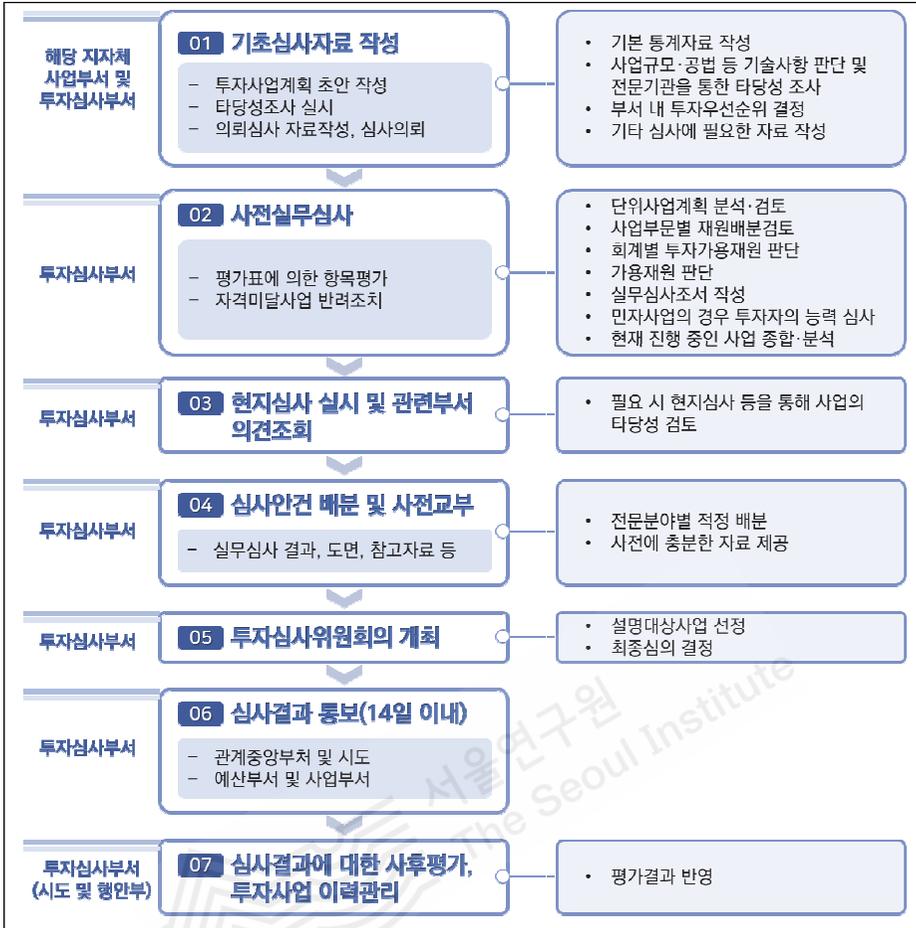
(4) 사후절차(심사 통과 이후)

① 예산편성

- 지자체는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건설공사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적정 또는 조건부) 이후 기본설계 예산 편성이 가능함
 - 기본설계를 생략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 행사성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는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심사

② 지방의회 의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통과 후 지방의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 증액, 기간 연장 등 지방의회 재의결이 필요한 경우 다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단계별 조치사항

2_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1)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요¹⁾

(1) 도입 배경 및 의의

- 지방재정사업의 대형화·복잡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지방 확산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사전검토제도 도입 검토
- 200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대상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의무화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는 등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4년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²⁾, 이후 2021년 7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³⁾
 - 또한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지정⁴⁾

1)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를 참고하여 작성

2)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2호, 2014. 11. 29., 제정)

3)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1호, 2021. 6. 25., 일부개정)

4)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50호, 2022. 7. 11., 일부개정)

(2)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 수행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받은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의뢰 시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제출할 필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 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명시

[표 2-12] 타당성조사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p>「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 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p> <p>③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3)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① 타당성조사

가. 대상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 신규사업이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을 말하며,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포함

나. 면제사업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투자심사 제외 대상

② 타당성 재조사

가. 대상사업

- 당초 투자심사 시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타당성조사 미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모가 증가한 사업
-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임에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 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심사를 받은 후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left(\text{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 원} \right) \times \frac{20}{100} + 150\text{억 원}$$

-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⁵⁾되거나 보류⁶⁾된 사업
- 사업 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면제사업

-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법령 개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⁷⁾
-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5) 투자심사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

6) 착공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7) 법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시설물 운영상 안전 문제가 확인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식품 안전 문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된 사업 등

(4) 타당성조사 절차

① 조사 의뢰

-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수시 의뢰 가능
 - 수시 의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
- 타당성조사 의뢰서에는 사업계획(안), 운영기간 시설운영계획, 관련 증빙자료 등을 작성

[표 2-13] 타당성조사 정기 의뢰 시기

신청 단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시·군·구 → 시·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9월 30일
시·도 → 행정안전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15일

[표 2-14] 타당성조사 의뢰서 주요 작성사항

구 분	내 용
사업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및 입지, 사업수행주체, 사업추진체계, 자원조달방식, 사업기간, 총사업비(산출내역 포함), 수요예측 산출근거, 자원조달계획 및 가능성, 운영계획, 자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운영기간 시설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 운영 비용 및 수입 등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도면, 상세도면(배치도 등), 사진, 조감도 • 그밖에 타당성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 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 (기타 재정사업) 사업 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또는 지원율, 사업 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등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② 조사과제 선정

가. 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조사 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에 대해 충실성, 정확성, 일관성 등을 사전검토
-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없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경우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의뢰서 반려 가능

[표 2-15] 타당성조사 의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세부 내용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 내용 제시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 명확히 제시
합리적인 운영기간 시설운영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준공 후 운영방식(추진기관이 자체 운영, 외부 위탁운영 등) • 운영 비용 및 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 제시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자료 제출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나. 사업계획 변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사업이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획 변경 요청 가능
-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

다. 조사 철회

- 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타당성조사 철회 가능
 -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타당성조사 의뢰 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 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하나,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계획 변경 후 2개월 이내에 보완되지 않아 조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 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사 약정

가. 수수료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사 기간 및 수수료 관련 약정체결
-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및 약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
 -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 절차: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행정안전부로 위탁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일괄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나. 조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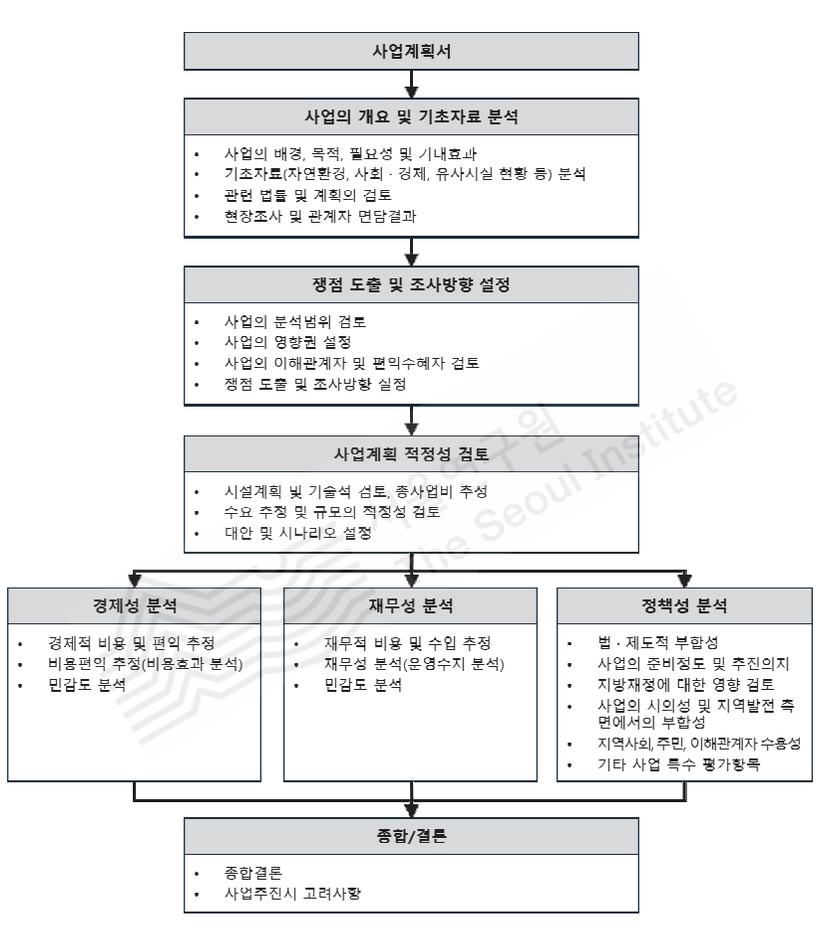
-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나,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 요건: 1)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존재하며, 2)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
-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이란,
 -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일반투자사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일반투자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일반투자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공공청사 건립사업(다만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는 제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④ 조사 결과통보

-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5) 타당성조사 체계

- 타당성조사 체계는 사업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분석으로 구성
 - 의뢰되는 사업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성 분석 모두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수행할 수도 있음⁸⁾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

[그림 2-3]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체계

8) 환경시설 대보수 사업, 시·군 통합 등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청사 건립사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이나 기타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B/C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할 필요성이 높거나 경제성 분석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은 수요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추정,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만 수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기도 함

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주요 내용⁹⁾

(1)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조사 의뢰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여부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 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

(2)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
-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사업시행 효과의 구체성, 현실성, 명확성 등
 -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 산정의 적정성, 추가적 비용 발생 가능성, 주요변동에 따른 비용변동 가능성 등
 - (비용-효과성) 비용 대비 성과 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대안 검토 등

(3) 재무성 분석

- 재무성 분석은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
 - 재무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 준수

⁹⁾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5)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를 참고하여 작성

(4) 정책성 타당성 분석

- 정책성 타당성 분석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자원조달계획 및 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을 분석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표 2-16] 정책성 타당성 분석 주요 항목(예시)

구분	내용
사업계획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업(계획)과의 중복성 여부 및 주변 사업과의 경쟁관계 등 • 입지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 분양 및 임대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적정성 여부 • 운영계획 적정성 여부
행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경위 및 투자심사 이력 • 사업주체(지자체)의 사업추진인지 및 사업의 준비정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사업 우선순위 • 상위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 지구 지정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 관계기관(사전·사후) 협의사항 등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수용성 • 민원 최소화 방안
자원조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현황) 분석 • 사업 시행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자체자원조달(가용자원) 가능성 유무(지자체 재정 현안 등) • 국비, 시도비 조달 가능성 • 지방채·공사채 여부 및 적정성 여부 • 보증·미이행 확약 여부 및 적정성 여부 • SPC 구성 및 민자조달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낙후도(지역발전지표) 분석 •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 사업 추진목적 달성 가능성 • 고용효과(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기타 특수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 관련 각종 특수성 항목(예: 국방, 재난, 안전 등)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

3)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현황

(1)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현황

①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 수행(약정체결) 현황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평균 약 70건의 타당성조사 수행(2019~2023년 기준)¹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1년에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2022년 기준 총 15건의 타당성조사 수행
 -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수행(약정체결) 실적은 전체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건수의 약 15% 수준

[표 2-17]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단위: 건, %)

구 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중앙 투자심사(B)	중앙투자심사 대비 타당성조사 (A)/(B)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합 계(A)		
2019	71	0	71	497	14.3%
2020	81	0	81	479	16.9%
2021	68	0	68	448	15.2%
2022	49	15	64	413	15.5%
2023	84	-	84	523	16.1%
평균	70.6	15	73.6	472	15.6%

주: 1) 철회, 반려, 해지 사업 제외한 약정 체결사업을 집계한 수치

2) 2023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차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

자료: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분석센터 연차보고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www.lofin365.go.kr)

¹⁰⁾ 연차보고서상 타당성 조사 사업의 의뢰기관(시·도, 시·군), 사업명, 총사업비 등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현황 파악에 한계가 존재함

②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 시도별 투자심사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검토(2022년 기준)
 - 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경기도 27건, 서울시 18건, 경상남도 10건, 충청북도·충청남도 8건 등
 -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사업은 경기도 78건, 서울시 34건, 강원도·경상남도 26건, 경상북도 25건 등

[표 2-18] 시도별·사업비 규모별 투자심사 사업 현황(2022년 기준)

구 분	3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사업(건)	사업비(억 원)	사업(건)	사업비(억 원)
서울	34	13,753	18	57,646
부산	15	5,793	4	6,603
대구	8	3,329	5	7,301
인천	8	3,142	7	45,168
광주	12	4,826	4	27,482
대전	5	1,891	3	7,007
울산	7	3,061	3	9,142
세종	1	355	-	-
경기	78	30,840	27	194,626
강원	26	10,491	4	4,256
충북	13	5,198	8	13,089
충남	16	6,371	8	9,389
전북	15	5,539	1	1,050
전남	22	8,912	7	8,382
경북	25	9,511	1	2,326
경남	26	10,032	10	18,881
제주	2	637	1	729
합계	313	123,681	111	413,077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3_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요¹¹⁾

(1) 도입 배경 및 의의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본예산 반영 전에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투자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존 타당성조사와 달리 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대상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
 - 제도 도입 이전의 타당성조사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둠
-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제정하여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도모
 -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 수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

(2) 법적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 제도
-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 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

11) 「202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24)를 참고하여 작성

(3)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①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신규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
 -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이 대상

② 면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

[표 2-1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생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4)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이외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있음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한 일괄 타당성조사를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

(5) 대상사업의 선정절차¹²⁾

①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직권으로 선정

②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하는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사를 요구
 -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신규 예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③ 직권 선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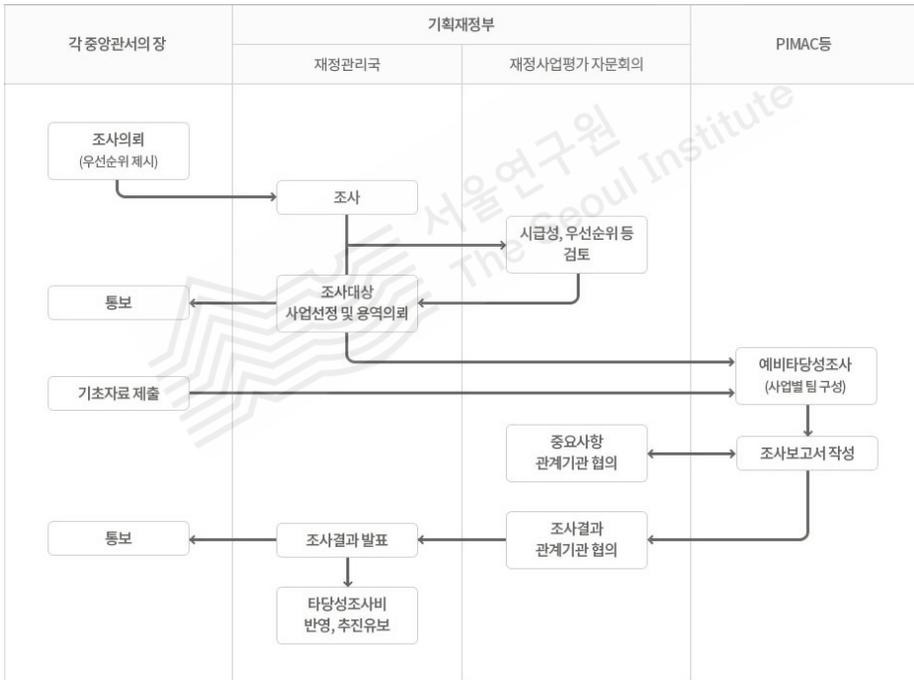
¹²⁾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pimac.kdi.re.kr/about/validity.jsp>)를 참고하여 작성

④ 대상사업 선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

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요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수행
 - 단,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변경 및 추가 지정 가능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

[그림 2-4]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 및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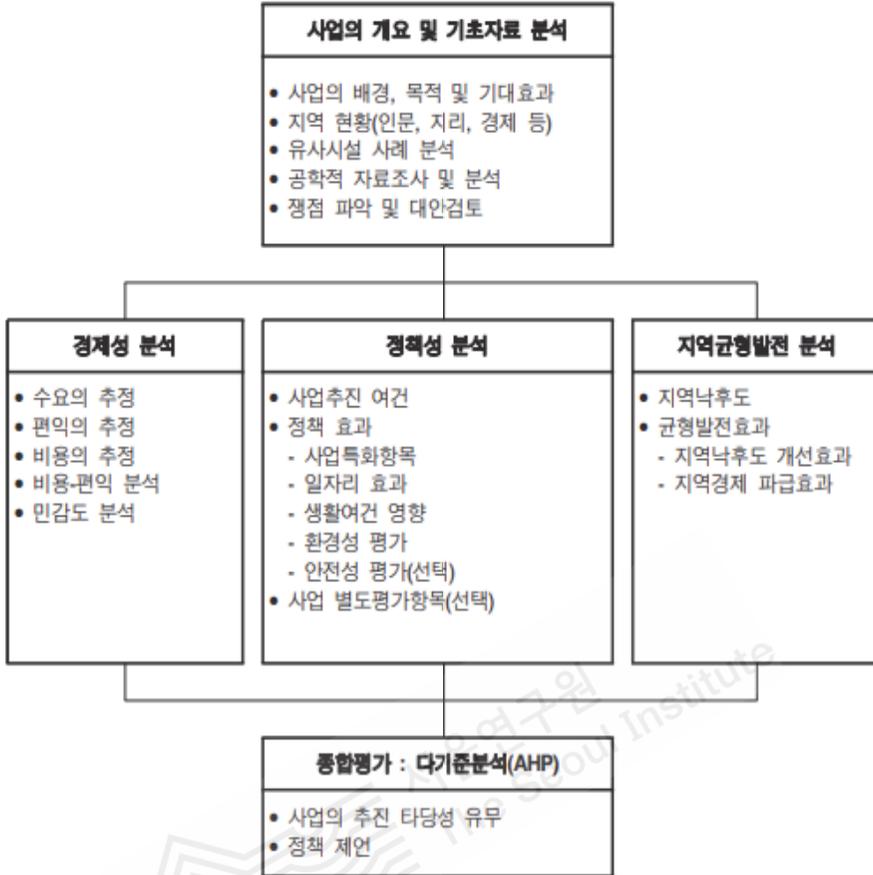
2)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¹³⁾¹⁴⁾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발전분석의 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하나 대상분야의 특성에 따라 일부 조사항목의 차이는 존재¹⁵⁾
 - 건설 분야 사업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을 파악한 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실시
 - (경제성 분석) 수요, 편익, 비용 추정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
 - (정책성 분석)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
 -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와 균형발전효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
 - 정보화 분야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은 건설 분야 사업과 동일하나, 해당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분석을 추가로 실시
 - 기본 조사항목을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분석으로 하되, 사업의 주된 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0.5점 이상의 점수 획득 시 사업을 시행
 -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 수행

13)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서울연구원, 2022)을 참고하여 작성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25년 하반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준비 중이므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

15)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항목 재구조화 연구」(서울연구원, 2024)를 참고하여 작성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24, 「202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그림 2-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1) 경제성 분석

① 분석기법

- 경제성 분석은 비용, 수요 및 편익 추정을 통한 비용 및 편익 수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 분석기법으로는 비용편익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활용
 - 일반적인 분석기법은 비용편익 비율(B/C ratio)

- 비용편의 비율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로,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

$$\text{비용편의 비율}(B/C) = \frac{\sum_{t=0}^n \frac{B_t}{(1+r)^t}}{\sum_{t=0}^n \frac{C_t}{(1+r)^t}}$$

B_t = t년도의 편익 r = 사회적 할인율(4.5%)
 C_t = t년도의 비용 n = 분석기간(30년 or 40년 등)

- 순현재가치는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 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

$$\text{순현재가치}(NPV)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text{내부수익률}(IRR)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표 2-20]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특징	비용편의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하기 용이 • 사업 규모 고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를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를 고려 • 타 분석에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 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배타적인 대안 선택의 오류 발생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하기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 발생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 도출이 가능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연구」

② 경제성 분석 주요 전제

- 경제성 분석의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의미
 - 특정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물론 추정된 편익 발생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 민간의 모든 명시적·암묵적 비용을 분석에 포함
-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모든 비용과 편익은 특정 연도 말 기준 불변가격으로 산정
 -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을 적용
 - 건설사업은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건설 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
- 비용은 용지구입비에 대해 잔존가치를 반영한 비용으로 분석
-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서는 미래사업의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
 -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7~8% 이상, 선진국의 경우는 5~6% 수준을 적용

(2) 정책성 분석

- 정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포함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 틀 속에 포함할 수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 결과 제시
-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총괄지침」의 개정을 통해 정책성 분석 체계 개편

-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
- 전문가 평가나 모든 사업에 적용하기에 실익이 적은 항목들을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 정책성 평가 구조 형성

[표 2-21] 정책성 분석의 주요 검토 내용

세부 지표		주요 검토 내용
사업추진 여건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사업의 준비 정도
	지역주민 등 외부여건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갖는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여부 파악(지방자치단체, 특정 이익집단 포함)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 사업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운영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생활여건 영향	•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환경성 평가	•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 보전 기여도 등
	안정성 평가	•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사업특화 항목	자원조달 위험성	• 운영비 조달에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부여 • 원인가 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대비 이미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문화재 가치	•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연구」

(3)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
 - 경제적 분석 구조상,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므로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가능성 존재

-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기회는 줄어들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 격차 심화
-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낙후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에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지역낙후도 평가와 균형발전 효과 분석으로 구성
 - 지역낙후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에서 산정한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적용
 - 균형발전 효과 분석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세분화
 -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해당 사업 및 지역과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의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활용하여 분석

[표 2-22]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주요 검토 내용

세부 지표		주요 검토 내용
지역낙후도 평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낙후도는 지역낙후도 지수에 따라 산정
균형발전 효과 분석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 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 • 해당 사업 및 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평가
추가평가 항목		• 필요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연구」

(4) 정보화 분야 사업의 기술성 분석

- 정보화 분야 사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 효율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
 - 정보화 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
- 기술성 분석은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기술이 기술환경, 업무환경, 사업 실행 환경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목적으로 분석
 - 업무요구 부합성, 적용기술의 적합성, 구현/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

[표 2-23] 정보화 분야 사업 기술성 분석의 주요 검토 내용

세부 지표	주요 검토 내용
업무요구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설계 내역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
사업목표 및 업무요구에 대한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 •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합한 수단인지 검토 • 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업무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성능 및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제시된 설계 내역이 업무 요구사항의 충족에 필요한 성능(기능, 용량 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
보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제시된 설계 내역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
상호운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원활하게 상호운용될 수 있는지 검토
시스템 용량 산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 설계 용량이 사업 목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지 검토
적용기술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기술을 선정하였는지 검토 •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이 사업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
기술숙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이 충분한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 • 적용하는 기술이 사업에서 목적인 대로 개발되어 기능할 수 있을지 검토
기술추세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술일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의 유효 수명기간 동안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유지 및 활용될 수 있는지를 기술발전 추이 관점에서 검토
기술종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비의 공급자가 특정 업체로 제한되어 향후 시스템의 유지, 운영, 확장 등이 특정 업체에 쫓매이는 등 기술종속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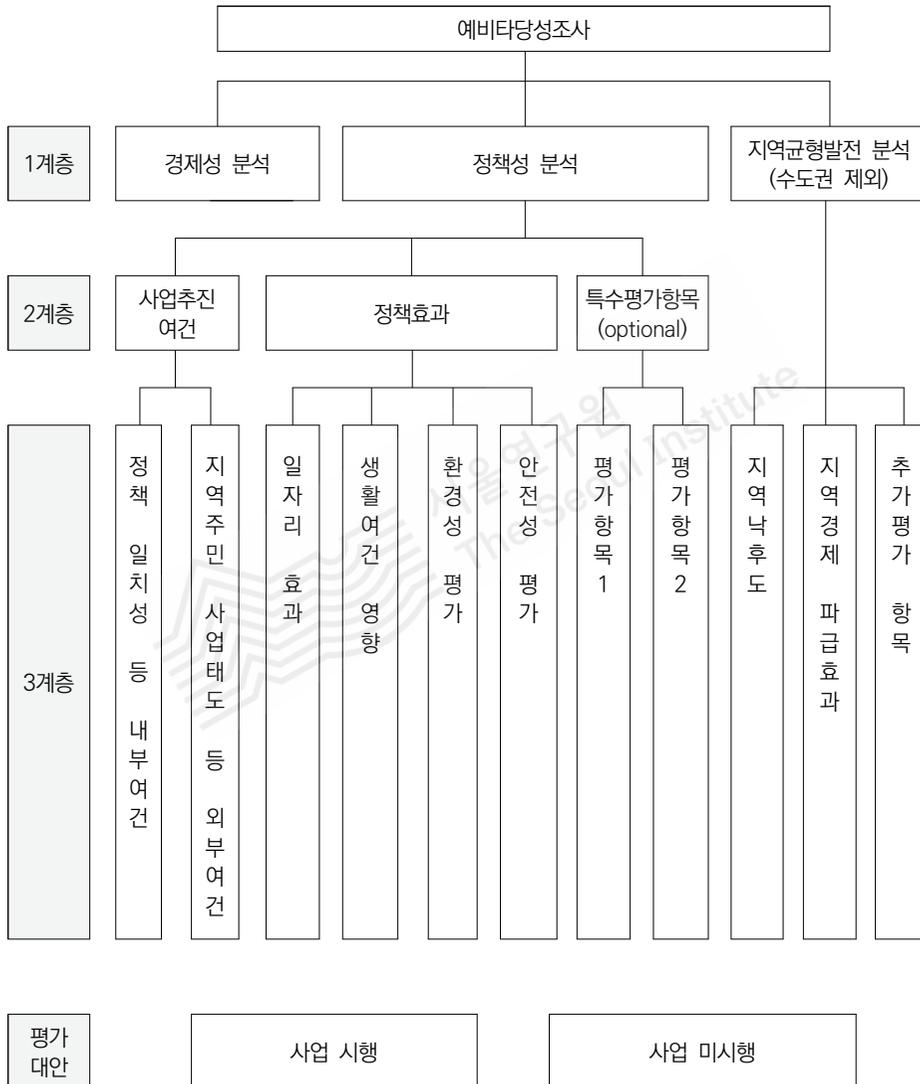
세부 지표		주요 검토 내용
	표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술이 관련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
	기타 기술적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항목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술적 위험요인
구현·운영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원활한 활용을 위한 시스템 측면에서의 위험성과 조직 측면에서의 역량과 준비도를 평가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 목표를 충족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검토 일정 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이나 외부 인허가, 연관된 다른 사업 등의 일정 지연요인 검토
	사업추진조직 준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체계가 해당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검토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해당 사업 계획의 추진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과의 협조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 구성요소별로 관련되는 기관을 식별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수준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게 될 조직이 사업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 해당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게 될 조직이 사업목표 달성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
	사용자 및 사용조직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잠재 사용자 및 사용 조직과 구축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 잠재 사용자 및 사용 조직이 구축대상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이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
	기타 구현·운영 상의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항목에서 정의되지 않은 구현·운영 상의 위험요인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연구」

(5) AHP 분석

- 종합판단을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도출
 - AHP 분석은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 중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
 - 이 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의 방법에 해당

- 해당 기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들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
- AHP 분석의 기본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나 대상분야(건설분야, 정보화 분야 등)에 따라 상이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연구」

[그림 2-6]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구조

-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 AHP 분석을 통한 종합점수를 근거로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 중에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
 - 종합평점이 0.5점이면 중립을 의미
 - '사업 시행'의 종합평점 \geq 0.5이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도출
 - '사업 시행'의 종합평점 \leq 0.5이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도출
 - 평가기준 가중치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에 따라 계층별·부문별 가중치의 산정 범위를 부여

[표 2-24] AHP 수행 시 평가 가중치 산정 범위

구 분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건설사업	수도권	60~70%	-	30~40%	-
	비수도권	30~45%	-	25~40%	30~40%
정보화 사업	B/C 분석 시	40~50%	30~40%	20~30%	-
	E/C 분석 시	30~40%	40~50%	20~30%	-
기타 재정사업	B/C 분석 시	25~50%	-	50~75%	-
	E/C 분석 시	20~40%	-	60~80%	-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표 2-25] 사업 별도평가항목 유무에 따른 가중치 산정범위

구 분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사업특수평가
사업별도 평가항목	미포함	30~40%	60~70%	-
	포함	20~30%	50~60%	20~30%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종합평가 시, 평가자의 응답설문 결과가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평가자가 재설문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그밖에 종합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가 종합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칠 수 있음

4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

1)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기능 및 역할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재정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를 활용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각 지방연구원 내 독립된 조직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재정·경제·도시계획·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구성
- 전국 14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중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명시된 곳은 8곳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8개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해당 조례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명시

[표 2-26]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예시)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p>「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p> <p>①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 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표 2-27]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시기 및 근거

(2025년 4월 기준)

구분	설립조직	센터명	설립 시기	조례 유무	민자 전문기관
서울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2. 5.	○	○
부산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9.	○	○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2023. 2.	-	-
인천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1.	○	○
광주	광주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	2023. 10.	-	-
울산	울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1.	-	○
경기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 9.	○	○
충북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	2012. 2.	○	-
충남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1.	○	-
전북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4. 10.	-	-
전남	전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5.	-	-
경북	경북연구원	공공투자센터	2023.	-	○
경남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5. 2.	○	○
제주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10.	○	-

자료(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 재정투자사업 관련 업무는 14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모두 수행 중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별로 업무 범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투자심사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투자심사 절차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업무 범위와 역할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다룸
- 투자심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등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
 - 여러 센터의 연구진은 연구원 내 연구부와 겸직으로 근무하면서 센터 고유업무 외에도 정책연구, 제도 개선연구, 등 다양한 과제에 참여
- 7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 중

- 현재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등 7개소
 -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들은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 관리이행계획 수립, 협약서 검토 및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업무 수행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외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총 11개 기관이 있음¹⁶⁾

[표 2-28]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근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의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의3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의3</p> <p>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 그 외에도 센터별로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적정성 검토, 재정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등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
- 센터 예산은 연구원 예산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거나, 연구원 예산 중 별도 세목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¹⁶⁾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외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원 등 11개 기관이 있음

2)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세부 수행업무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로 시·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중앙투자 의뢰심사 사전검토,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군·구가 시·도에 의뢰하거나 혹은 시·도 자체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신청 접수 전에 사업의 기본계획, 수요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부서에 수정을 요청
 - 자체 검토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시·도 투자심사 담당부서에 최종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부서는 이를 사전 실무심사에 활용
 - 인천,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정기투자심사 의뢰 전 의뢰서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는 사전검토 제도 운영하고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은 심사 담당부서와 합동집무 형태로 실무 심사를 수행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사업의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서류의 오류를 바로잡고 보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투자심사 통과율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재정의 낭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
 -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도록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임
 - 센터장 또는 연구진이 투자심사위원으로 참석하거나, 위원회에 배석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제안서 검토, 타당성조사(적격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¹⁷⁾

17)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수행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여 사업의 기본 구조, 자금조달계획, 추진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
- 민간이 제안한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적격성조사)를 수행하여 경제성, 재무성 등을 분석
 -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직접 적격성조사를 수행하며, 사업비 산정, 수요예측, 재무모델 검토 등을 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협약(안) 검토, 협상 지원 및 계약조건 조율 등을 수행
- 운영개시 시점의 재무모델을 검토하여 수익률을 조정하고, 자금조달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
- 이 외에도 민간투자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제안서 평가, 협약서 검토, 각종 대행업무 등 다양한 전문업무를 수행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도 전반의 개선과 정책기획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
 - 투자심사 및 재정관리와 관련된 지침·가이드라인 연구, 제도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기반을 마련
 -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투자심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제성·재무 분석 및 정책적 분석 기준을 체계화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업무를 수행
 -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를 조사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연구
 -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부문 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배분체계와 운용체계를 분석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 외에도 공공투자사업 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분석

-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예산 성과 계획서 검토, 국비지원사업 발굴 및 기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재정투자심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전문기관 워크숍, 포럼 등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교류 활동을 운영

[표 2-29]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별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연구사업	기타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 검토 타당성검토 (시투심, 중앙투심)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사전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사전검토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분석·검토 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안) 검토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조정, 재무모델 자문 및 검토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관리아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이드라인 연구 제도개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타당성 검토 맞춤형 컨설팅 (재정, 민자사업) 실무자 교육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 검토 중앙투자심사 사전검토 사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대응 대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업무 개별법령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및 실시협약안 검토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 워크숍 공공투자관련 포럼 공공투자사업 관련 담당자 교육 및 강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 사전검토 ※ 필요시 연구원 차원의 개별 수탁 또는 정책과제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필요시 연구원 차원의 개별 수탁 또는 정책과제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필요시 연구원 차원의 개별 수탁 또는 정책과제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필요시 연구원 차원의 개별 수탁 또는 정책과제로 진행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검토 투자심사 검토 타당성조사 (500억 미만) 중앙투심 대응 지원 에타 대응 지원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심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검토(형식검토) 타당성조사 (적격성조사) 관리아행계획수립 그 외 각종 대행업무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용역비 적정성 검토 컨설팅 및 교육 업무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검토 투자심사 검토 (2025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구분	주요 업무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연구사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투심 대응 지원(예정) • 예타 대응 지원(예정) •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심 검토 지원(예정) 			협업)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검토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정책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컨설팅 등) • 타당성조사(적격성조사) • 관리이행계획수립(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 재정부문 연구(보통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 • 용역비 적정성 검토(기술용역심의 지원)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적정성 검토 • 국비지원사업 발굴 및 기획지원 • 교육 업무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투자심사 사전검토 • 도 중앙투심 지원 • 투자심사 컨설팅 •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그 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검토 • 관리이행계획수립 검토 • 재정지원금 검토 • 재구조화 검토 •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 협상 대행 및 관련 연구 • 민간투자사업 컨설팅 • 그 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 그 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컨설팅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그 외 기타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컨설팅 • 투자심사 검토 •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타당성조사 검증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검토 • 투자심사 검토 •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심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컨설팅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공기업 및 시군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컨설팅 • 투자심사 검토 •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연구사업	기타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 중앙투심 대응 지원 예타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검토 투자심사 검토 중앙투심 대응 지원 예타 대응 지원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심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검토(형식검토) 타당성조사(적격성조사) 관리이행계획수립(검토 중) 그 외 각종 대행업무 및 연구(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용역비 적정성 검토(용역심의 지원) 컨설팅 및 교육 업무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 검토 투자심사 타당성검증 중앙투심 대응 지원 예타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분석·제안서검토 사실사업기본계획수립·제3차 제안공고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지원 및 실시협약(안)작성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민자사업 업무 개별법령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컨설팅 및 교육 업무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 사전 검토 타당성조사(500억 미만) 중앙투심 대응 지원 예타 대응 지원 주요재정사업 평가 국비 신규사업 발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용역 대상사업 공유재산 심의안건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국가 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 변경 투자심사, 주요재정사업 자체평가보고서 공무원 컨설팅 등

- 1) 광주공투센터는 23년 10월 신설되어 투자심사 검토만 진행 중이며, 사전검토, 중앙 투심 대응, 예타 대응 등은 25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확대 예정
- 2) 동일한 업무에 대해 센터별로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어, 명확한 업무 구분은 투자심사 절차 파트에 별도로 제시함
- 3) 타당성조사의 경우 행안부 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아닌 사업들 중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

0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 1_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 2_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구분 간소화
- 3_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액 제외
- 4_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0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1_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1) 현행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했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마친 사업도 별도의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사업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면제 대상이나, 동법에 의한 투자심사는 이행해야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수행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함

2) 문제점

(1) 행정력 낭비 및 사업추진 지연

- 동일한 사업에 대해 타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 투자심사가 중복으로 진행되어, 행정력 낭비, 사업 지연 등이 발생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 요청으로 수행하며,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은 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이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미 타당성을 검토했음에도 지방비 투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심사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가 시작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5항 ‘실시설계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와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 사업자 공모, 실시협약 체결 등으로 장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추가적인 투자심사는 사업 지연을 유발
 -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연이어 요구하고, 사업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례도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사업 지연을 초래

(2)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실효성 문제

- 사업 검토 항목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 투자심사에 의한 사업 검토의 차이는 제한적
 -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의 가장 큰 관점 차이는 재정 부담 주체(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반려된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여건이나 사업 추진 절차상의 준비 수준 등 행정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사업의 입지 여건 변화, 사회적 수요 변화,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의 사유는 드문 것으로 판단됨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5건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반려 건

연도	사업명	사업비(억 원) (국비 비중)	중앙심사 결과	중앙심사 결과 주요 사유	예비타당성조사
2022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4,340 (40%)	재검토	총사업비 범위 내 사업추진 지방재정 부담최소화	2023년 수요예측재조사
2023	공단고가교~서인천 IC 혼잡도로 개선	5,040 (50%)	반려	-	총사업비 5,040.71억 원
2024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3,177 (13.82%)	반려	SPC설립과 재원조달확정	총사업비 3,177억 원
2024	국가로봇 테스트필드사업	1,998 (65.32%)	반려	-	총사업비 1,997.5억 원
2024	한류·공연관광 컴플렉스 조성사업	907 (38.92%)	재검토	사업비조달계획	2018년 총사업비 907억 원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언론기사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에서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다른 검토항목은 이중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업 기간 장기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

(3) 민간투자사업 관리 체계와의 모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특례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상의 일반적인 절차를 민간투자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법 체계 간 충돌과 모순이 발생
- 민간투자법에 따른 검토 결과가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절차와 충돌하거나 별도로 인정되지 않아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과 운영의 일관성에 혼선을 유발

[표 3-2] 민간투자법 vs 지방재정법 비교

구 분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적용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투자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검토 주체	민간투자심의회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
심사 대상 결정 기준	민간제안서가 접수된 후 적격성 검토 및 심의 대상 지정	총사업비 기준(기초 60억 원, 광역 300억 원 이상 등)
심의 절차	① 민간제안 접수 ② 적격성 검토 ③ 타당성조사 ④ 민간투자심의회위원회 심의	① 타당성조사 ② 투자심사
법적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등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3)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사업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투자심사를 거칠 필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항목 중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로 대체하고,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
 - 국비를 제외한 비용이 단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되는 경우 자체심사로 제한할 필요

[표 3-3]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투자심사 간소화(예시)

지표명	주요 검토 사항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재원조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료 누락 등
사업의 성격	지자체 사업 여부,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 여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대체)
주민 수해도 및 필요성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대체)
사업의 시급성	타 사업 대비 시급성, 착수 시점의 적정성
사업규모·비용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대체)
사업의 타당성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적정성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재정여건 고려, 재원조달계획 적정성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대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마친 사업은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면제할 필요
 -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면제할 필요
 -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심사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간 역할 충돌을 방지하고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민간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 행정안전부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표 3-4]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개정(안): 투자심사 제외사업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투자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그 밖에 재난 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른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투자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그 밖에 재난 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른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6. (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예비타당성조사 및 동법 제38조제5항에 의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_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구분 간소화

1) 현행

-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상급기관에서 투자심사(의뢰심사)
 - 투자심사는 의뢰주체와 심사주체가 동일한 자체심사와 의뢰주체와 심사주체가 동일하지 않은 의뢰심사로 구분
 - 이전재원이 포함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광역)/60억 원(기초) 이상인 경우, 이전재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의뢰심사 시행
 -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광역)/40~300억 원(기초)인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도 의뢰심사 시행

[표 3-5] 지방재정 투자사업 규모·유형별 투자심사 대상 및 기관(일부)

의뢰주체 \ 심사주체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광역 자치단체 (시·도)	중앙심사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60억 원 미만 일반투자사업(대도시 200억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억 원~200억 원 일반투자사업
광역 자치단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 원~60억 원 미만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20억 원 이상 일반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억 원 이상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억 원~300억 원 미만 일반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40억 원 이상 일반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억 원 이상 일반투자사업 • 300억 원 이상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광역 자치단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억 원~300억 원 미만 일반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40억 원 이상 일반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억 원 이상 일반투자사업 • 300억 원 이상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주: * 별표는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인 경우 총사업비가 기초 200억 원 이상, 광역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심사를 받는 일반투자사업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정리

2) 문제점

- 의뢰심사는 재정투입 주체와 투자심사 심사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심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는 구조
 - 심사주체인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 실패 시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가
 - 반면, 의뢰 지방자치단체는 의뢰심사를 이유로 자율적 판단을 회피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같은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장려하도록 명시
 -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결과적으로 지방의 투자심사 과정이 형식화·간소화되고, 실질적인 투자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부작용 발생(서울연구원, 2020)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수립 및 심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한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의 탄력적 추진이 어려워짐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심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지방의 특수한 정책 수요가 배제될 우려(박병희, 2016)
- 총사업비가 200~300억 원이면 사업의 추진 주체에 따라 심사 주체(중앙 또는 지방)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 혼선을 야기
 - 해당 구간의 추진 주체가 광역자치단체면 자체심사, 기초자치단체면 의뢰심사로 구분
 - 200억 원 이하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이후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2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
 - 재정 공동 분담 사업에 대한 고려가 없어 추진 주체에 따라 자체/의뢰 심사 구분

- 광역자치단체 역점사업 중에는 사업 대상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도비와 시·군·구비를 5:5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음
- 공모사업 역시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주체인 자체심사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이면 의뢰심사 대상임
-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 투자심사에서 사업의 성격이 지역 내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업계획의 구체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추진 불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
-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2019년에 시행된 공모사업으로 괴산군과 안동시가 각각 콩, 사과 작물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의 추진 주체별 심사 주체가 달라 결과가 다름

[표 3-6] 동일 공모사업 사업추진 주체에 따른 심사기관과 심사결과

연 도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비(억 원)	심사기관	심사결과
2019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안동시	252	경상북도	조건부
2020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충북(괴산군)	257	행안부	재검토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언론보도

3) 개선방안

-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뢰심사 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 필요
 -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심사주체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개정을 검토할 필요
- 규정 일부를 변경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투자사업과 광역자치단체의 전액 자체재원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로 전환할 필요
 - 기초자치단체의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 규모를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00억 원으로 조정하고, 200~300억 원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일반 투자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사할 필요
 -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청사·문화·체육시설 구분 없이 일반투자사업으로 분류하여 자체심사로 전환할 필요
 - 수년 전에는 호화청사, 수요 부족 문화시설 등 청사·문화·체육시설 만의 문제가 있었으나 면적 기준 수립 등으로 보완되었으므로 이제 자체심사로 전환할 필요
 - 장기적으로 국비가 일정 규모(예: 총사업비의 10%) 이하인 사업도 자체심사로 전환할 필요
- 재정투입 주체와 심사 주체를 일치시킴으로써 사업계획 및 심사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가 기대
 -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심사 권한은 유지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뢰심사가 늘어나, 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의 범위와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3_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¹⁸⁾

1) 현행

- 2015년 행정안전부¹⁹⁾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015)을 개정하여 총사업비에 공유재산의 가격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공유재산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기준 변경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024)에서는 공유재산가격을 포함한 사유와 포함 방법을 일부 제시
 - 총사업비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인 부지가액(이하 공유재산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부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 기회비용이므로 부지의 기존 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건립하거나 증축·개축하는 경우, 지하에 시설 조성 후 복개하여 부지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공유재산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

¹⁸⁾ 해당 내용은 「서울시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 연구」(서울연구원, 2025)를 참고하여 작성

¹⁹⁾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 2017년 7월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행정안전부로 통일하여 작성

2) 문제점

(1) 법률적 근거 미비

- 「지방재정법」에서의 총사업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과 기관,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등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주요 기준
 -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격이 포함되면서 총사업비가 상승하여 상위기관 의뢰심사 및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등의 대상이 확대
- 공유재산가격의 총사업비 반영 사유에 대한 논리가 미흡하고, 총사업비에 서 공유재산가격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경제적·논리적 근거도 부족
 - 총사업비에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 판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판단 주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총사업비 반영 근거로 미흡
 - 공유지의 기회비용은 공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치이나 공시지가로 계산한 부지가액은 기회비용의 하한(lower bound)일 가능성이 높음
 -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부지에 기존 용도와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나 “공유수면 위에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공유재산가격을 제외하도록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회비용은 존재하므로 규정 간 상호 모순 발생
- 또한 행정안전부 매뉴얼로 다른 기관들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에 부정적인 영향
 - 지방재정사업의 총사업비는 「지방재정법」이 아닌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의 업무 매뉴얼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만 규정 명시
 -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아닌 내부 업무처리에 적용하는 업무 매뉴얼로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지 않은 총사업비의 개념 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있음

(2) 타 법령과 내용 불일치

- 「국가재정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서도 총사업비를 다루고 있으나 법령별 내용이 상이
 - 법령별 역할과 목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총사업비의 정의나 공유재산 반영 여부 등의 내용이 상이
- 「국가재정법」과 민간투자법에서는 사업주체 소유 부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부지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나 「지방재정법」 사업은 부지비용(공유재산가격)을 총사업비에 반영
 -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며, 사업주체가 소유한 자체 토지의 비용은 제외
 -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심사할 때 자체 토지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비용에서 보상비를 제외
 - 민간투자법에서는 총사업비를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 정의하며, 보상비는 사업 시행을 위한 실제 보상비만 반영

[표 3-7] 법령별 총사업비 내 사업주체별 부지비 반영 여부

구 분	사업주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지방재정법 사업	국가	○	○	○
	지방자치단체	○	○	○
국가재정법 사업	국가	X	○	○
	지방자치단체	○	X	○
민간투자법 사업	국가	X	- ¹⁾	○
	지방자치단체	- ¹⁾	X	○

주: 1) 관련 내용 언급 부재

자료: 서울연구원, 2025, 「서울시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 연구」

(3) 공유재산 반영 여부와 반영 수준이 모호

-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격을 포함하는 명확한 반영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실무자들의 혼선 초래
 - 사업 내용에 따라 공유재산가격 반영 여부와 반영 수준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
- 재정투자사업 검토 시 공유재산가격 반영 여부 및 수준이 모호했던 사업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유형1) 동일 부지 내 수직·수평 증축: 수직증축의 경우 원론적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일부 포함하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존재. 수평증축의 경우 반영 수준에 대해 논란
 - (유형2) 설비 또는 장치 설치: 해당 부지 전체 면적과 실질적인 사용 면적 등 반영 수준에 대한 논란
 - (유형3) 유수지 복합개발: 건축물 수직증축과 같은 맥락으로 공유재산가격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신규 대지를 개발한 것으로 보아 인접 유사 규모 대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
 - (유형4) 동일 목적의 건축물 개축·재축: 이용목적의 동일성 판단기준이 모호
 - (유형5) 토지 외 공유재산: 건축물의 일부 공간이 재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의 반영 여부와 수준이 모호

[표 3-8] 사업 유형별 공유재산가격 관련 논란

구 분	총사업비 반영 여부	공유재산가격 반영 수준 논란 여부	사업예시
유형1	○	○	○○복지관 증축사업
유형2		○	△△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유형3	○	○	□□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유형4	○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사업
유형5	○	○	◇◇산업관 조성 사업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 비현실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포함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용과 투자심사 의뢰 시 총사업비가 일치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투자심사 사업의 총사업비에는 실제 지출하지 않은 공유재산가격을 포함
-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사업비에는 실제 지출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어 이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결국 공유재산을 포함하는 방식은 향후 지출 예상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실적인 지출계획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투자심사 총사업비에는 공유재산 금액이 포함되는 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실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아, 투자심사의 총사업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음
 - 투자심사사업 컨설팅 과정에서도 공유재산 반영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음

3)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국가 재정정책 및 운영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산정방법을 일치시킬 경우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가격 반영 여부와 산정방법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는 실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할 필요
 - 사업추진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을 제외하고 경제성 분석 시 기회비용으로 반영
 - 단,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의 토지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공유재산가격(보상비)을 포함하여 산정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
 - 필요시 공유재산가격을 별도로 표기

[표 3-9]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개정(안): 공유재산 관련

현 행	개 정 (안)
3)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 방법 <input type="checkbox"/> 지자체가 부지(공유재산)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공유재산인 부지의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단, 이는 부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부지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 부지의 기존 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해당 부지에 건립하거나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 지하에 시설 조성 후 복개하여 부지는 다시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하천·호수 등 공유수면 위의 수상 공간에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3)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 방법 <input type="checkbox"/> 지자체가 부지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자체 공유재산인 부지의 가액을 총사업비에서 제외 (이하 삭제)

4_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1) 현행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의 사전관리시스템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해 사업이력이 관리되는 생애주기를 가짐
 - 현행 투자심사 이력관리제도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과 동법 제37조제1항의 중앙의 퇴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 2015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운영을 총괄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5.4)을 통해 투자사업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명시
 -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추진 절차, 주요 사업정보의 입력 내용과 방법, 평가주체와 평가대상, 보고 방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
 - 현행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는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준공 후 운영 단계별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 이처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투자사업 이력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 현황, 사업내용, 운영 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사업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 사업정보는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내용을 반영

[표 3-10] 투자사업 단계별 주요 사업이력 정보

준비단계	추진단계 /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 사전절차 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 정보)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 지방채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 일정정보(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 자체평가 정보 •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 문제점

(1) 이력관리 범위 및 대상의 제한

- 현행 이력관리제도는 사업 운영 단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있어 이력관리 대상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투자심사 통과 이후부터 사업 준공, 운영단계까지 관리 대상으로 하여 이력관리 대상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 관리 대상 사업이 일부 주요 사업(중앙투자심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등)에만 한정되어 다른 사업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관리 대상이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투자심사 사업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사 사업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전체 지방투자사업 중 10% 미만만 관리되고, 나머지 다수의 소규모·비중앙심사 사업은 이력관리에서 제외
 - 투자심사 제외 사업(특정 요건 충족 시 심사 면제) 역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투자심사 미통과(탈락) 사업은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상부터 계획 단계까지의 경험·정보 축적 및 사후 활용에 한계

(2) 자료의 신뢰성·정확성 저하 및 수집 체계의 비효율성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사업 정보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락이나 작성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매년 100~300건에 달하는 자료 재제출 요청이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 발생
- 제출된 자료가 실제 집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어려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문제 사업(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될 우려 존재

(3)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수행 역량 부족 및 표준화 미흡

- 이력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이력관리 주체와 전문기관 지정 주체가 달라 혼선이 발생할 우려 존재
- 지방자치단체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투자사업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존재
- 표준화된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 방식이 상이하고, 데이터의 축적·비교·분석이 사실상 불가능
 - 사업추진 단계별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입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 변경 이력이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부족

(4) 관리 결과 미활용

- 이력관리가 수행되더라도 그 결과가 공개되거나, 유사·신규 사업의 투자 심사 과정에서 환류되는 체계가 부재
 - 축적된 데이터가 차기 사업의 타당성 검증, 수요예측, 총사업비 산정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음
- 이력관리가 수행되더라도 그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주민과 지방의회 등 외부 감시·견제에 한계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총사업비 증액 내역, 수요예측 실패 사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유사한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3) 개선방안

(1) 관리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간소화 모델 도입

- 현행 중앙·대규모 사업 위주의 관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사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로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까지 의무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까지 관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10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필수 핵심 항목(총사업비, 사업 기간, 주요 변경사항 등)만 관리하는 간소화 이력관리 모델을 개발·적용
-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기대

(2) 데이터 연계 및 자동화를 통한 자료 관리 체계 고도화

- 차세대 e-호조 시스템과 이력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료 수집의 수기 작업을 최소화하고, 투자심사부터 예산 편성, 집행, 결산까지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
 - 이력관리 자료 제출의 정확성과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또는 재정분석 지표에 관련 항목을 반영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3) 이력관리 결과의 환류·활용 체계 강화

- 이력관리를 통해 도출된 중점관리사업 목록을 지방재정365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
-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된 사업들에 대한 조건부 내용에 대한 검토 강화
- 중·장기적으로 이력관리 평가 결과를 지방교부세 반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분석 등과 연계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실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환류 체계 도입 검토

04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 1_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 2_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 3_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 4_유사 중복 제도 개선
- 5_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04.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_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1) 현행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은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
 - 현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만 수행 가능²⁰⁾
-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는 시·도 자체심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중앙기관(LIMAC, LOMAC)에서 수행
 - 전액 자체재원 사업(예: 시비 100%)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투자심사는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시·도 자체심사를 받지만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중앙정부의 지정 전문기관이 수행
 - 투자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투자심사 의뢰 시 타당성조사 결과와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함

²⁰⁾ 교육재정이 포함된 사업 관련 내용은 제외

2)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약화

- 지방자치단체의 전액 자체재원 사업까지 중앙기관에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를 투자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사업 결정 등 지방재정 운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나 현 제도에서는 역할 수행에 한계
 - 지방자치단체장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나 중앙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의사결정 재량권이 축소
- 한편 「국가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3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수행
 - 또한 공공청사 신·증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그러나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국비 규모와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수행

(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주체 간 불일치

-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수행주체가 상이하여 책임이 분산될 우려
 -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투자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에 따라 책임이 분산
 - 또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동일사업에 대한 관점과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관성 부족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만 가중

[표 4-1]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단계별 수행기관

구 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광역자치단체	일반투자사업	행정안전부 지정 기관 (LIMAC, LOMAC)	자체심사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		의뢰심사(중앙)
기초자치단체	일반투자사업		자체심사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		의뢰심사(시·도)

(3) 지역사업의 특성 반영 및 적기 추진에 한계

- 재정투자사업의 복잡한 추진 절차와 다양한 심사주체, 타 법령과의 이중 규제 등의 문제로 필수적인 지역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투자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해야 하나,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의뢰는 연 4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
 - 사업 검토에 대한 행정 절차와 비용도 이중으로 발생
- 지방연구원 지방공공투자센터는 해당 지역 여건과 특수성,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나 중앙기관은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 정보 비대칭 등으로 중앙기관은 지역별 특성과 요구사항, 사업 여건(인구구조, 산업구조, 재정상황 등) 파악에 한계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기관에 지역의 특성, 여건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등 효율성 저하

(4) 민간에서 추진하는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부족

-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 민간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여 실제 투자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 민간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민간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는 전문성 부재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추진방식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결국 타당성조사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감사연구원, 2012; 마강래 외 2019)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민간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지만, 실제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개선방안

- 제도 개선방안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 가능
- (단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 정책 추세에 맞춰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필요
 - 전액 자체재원 사업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할 필요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자격과 경험을 갖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로 확대 지정할 필요
 - 전액 자체재원 사업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이천재원이 있는 사업은 중앙기관(LIMAC, LOMAC)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사례²¹⁾를 참고하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확대 지정할 필요

[표 4-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개정(안):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관련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21)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4.10.14.) :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영제7조제3항의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여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신설 2016.4.27., 개정 2018.3.29., 개정 2019.5.7.)

- 향후 국비 규모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사업만 중앙기관이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필요
- 사업추진과 투자심사의 결정(책임)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를 책임지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통해 타당성조사 기관과 투자심사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
 - 조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보고서 공개로 어느 정도 예방될 것으로 예상
 - 타당성조사 기관과 투자심사 주체를 일원화하여 일관성을 강화하고 중복 검토를 방지해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과 사업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중장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300~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필요
 - 중앙기관은 현재처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수행하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총사업비 300~500억 원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기준이 1,000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기준도 시·도 사업은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00~1,000억 원 사업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2_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1) 현행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의 판단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과 공사비 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공유재산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 총사업비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가격을 포함할지 여부는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
 - 현재는 대부분 사업에서 공유재산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표 4-3]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하는 방법

	지자체가 부지(공유재산)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	지자체가 부지 매입 및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포함 방법	<p>지자체 공유재산인 부지의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나, 이는 부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부지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의 기존 사용 목적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해당 부지에 건립하거나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 지하에 시설 조성 후 복개하여 부지는 다시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p>부지 보상비(보상배율 적용가 또는 감정가)를 총사업비에 포함</p>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 문제점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로막는 부작용 초래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결과는 투자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중앙집권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제약을 두는 부작용을 초래
 - 이전재원이 포함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기관의 타당성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함
- 공사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조사 실익이 낮은 사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행정적 비효율 발생
 - 공사비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LIMAC이 수행한 타당성조사를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중 보상비 비중이 80%를 초과하는 사업도 다수 존재
 - 공유재산가격이 높아 총사업비는 500억 원을 초과하나, 실제 공사비가 작아 경제성 분석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도 타당성조사 수행
 - 구청이 공공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예: 기부채납 450억 원, 공사비 100억 원)도 타당성조사 수행대상으로 판단

[표 4-4]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공사비 비중이 낮은 사례

(단위: 억 원)

년 도	사업명	공사비	보상비	기타비	총사업비
2022	○○ ○○공원 조성사업	39 (2.8%)	1,226 (89.4%)	107 (7.8%)	1,371
2023	○○시 ○○공원 조성사업	5,608 (8.1%)	60,489 (87.3%)	3,202 (4.6%)	69,299
2023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1,875 (15.1%)	4,618 (37.3%)	5,899 (47.6%)	12,392
2023	○○ ○○문화공원 조성사업	706 (14.4%)	4,051 (82.4%)	162 (3.3%)	4,919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2, 2023, 「202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2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결국 타당성조사 수행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
 - 특히 조사 및 심사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시행 시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보상비 상승 등 재정적 부담 확대

3)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
 -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시·도)는 500억 원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300억 원 이상으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차등화할 필요
- 총사업비와 공사비를 함께 고려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도입이 필요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기준에 ‘공사비(예: 300억 원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할 필요
 - 단순 토지·자산 취득 사업은 별도의 간이 조사 도입 필요

[표 4-5]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개정(안):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관련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의2(타당성조사)</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이하 생략〉</p>	<p>제37조의2(타당성조사)</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이며 총사업비 0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이하 생략〉</p>

- 제도 개선을 통해 타당성조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
 - 실익이 낮은 사업을 사전에 제외함으로써 전문기관의 자원을 보다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



3_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1) 현행

- 2015년부터 중앙기관에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며 중앙기관은 다양한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을 발간
 - 연평균 50건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수행 중
 - R&D, 의료, 폐기물, 산업단지, 문화·체육·관광, 도로 및 교통, 공공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침을 발간

2) 문제점

(1)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의 한계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방법론적 한계로 지방사업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론은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론과 큰 차이가 없어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는 편익 분석 방법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나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사업 분석에 중점을 두다 보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을 유사하게 적용
 - 국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론을 지역 소규모 사업에 적용하다 보니 편익 산출에 한계
 -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편익만 반영하고, 지역 및 사업 유형에 맞는 특수한 편익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지방사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문화, 관광, 복지사업 등에 대한 편익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이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방행정연구원(2020)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에서 B/C 비율이 1 이상인 사업이 12.7%에 불과하나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는 비율은 69.7%(나라살림연구소, 2024)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결과로는 대부분의 지방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추진한다면 재정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 기준이 비용과 편익에 치중하다 보니 사업의 정량적 효과만 파악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항목은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낙후도나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이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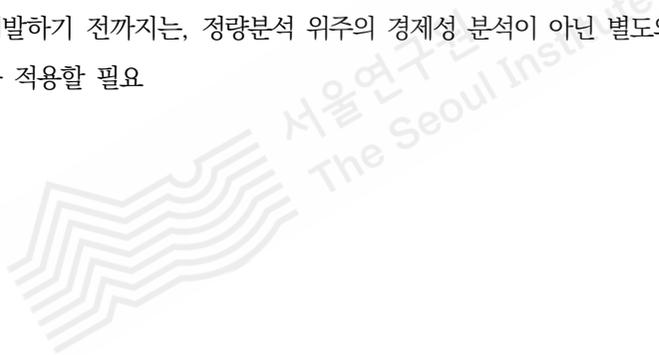
6지역	지방투자사업				국가투자사업			
	건수	B/C 평균	B/C≥1		건수	B/C 평균	B/C≥1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서울	15	0.62	2	13.3	45	1.15	30	66.7
부산	2	0.64	0	0.0	60	1.29	28	46.7
대구	4	0.49	0	0.0	39	1.47	28	71.8
인천	9	0.77	1	11.1	51	1.06	28	54.9
광주	1	0.72	0	0.0	27	1.02	13	48.1
대전	3	0.95	1	33.3	20	1.03	11	55.0
울산	1	0.16	0	0.0	25	0.98	11	44.0
세종	1	0.05	0	0.0	4	0.92	1	25.0
경기	51	0.51	3	5.9	144	1.05	75	52.1
강원	5	0.51	1	20.0	68	0.78	17	25.0
충북	9	0.84	2	22.2	46	0.96	22	47.8
충남	15	0.69	5	33.3	96	0.98	34	35.4
전북	5	0.55	1	20.0	52	1.25	25	48.1
전남	8	0.31	0	0.0	108	0.96	32	29.6
경북	4	0.87	2	50.0	111	0.76	29	26.1
경남	13	0.46	1	7.7	79	0.98	31	39.2
제주	4	0.47	0	0.0	11	1.2	6	54.5
계	150	0.58	19	12.7	986	1.02	421	42.7

자료: 지방행정연구원, 2020,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그림 4-1] 지방투자사업과 국가투자사업 B/C 1이상 사업 비율

3)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지역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
 - 지방의 문화, 관광, 복지사업 등에 대한 편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
 - 필수 인프라로 분류되는 환경 및 도로 사업 등은 경제성 분석의 추가 편익을 발굴할 필요
 - 중앙기관은 지방사업의 유형별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론 지침 연구를 수행하고, 개별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앙기관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동으로 지침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 소규모 문화 및 관광, 복지시설 사업에 적합한 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정량분석 위주의 경제성 분석이 아닌 별도의 평가체계를 적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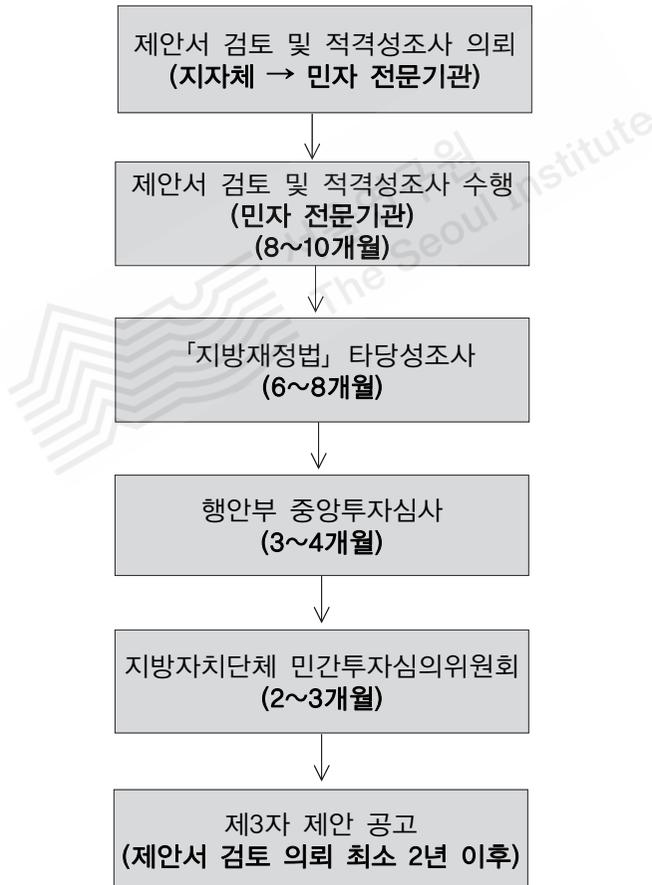
4_유사 중복 제도 개선

1) 현행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유사 중복 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건설기술진흥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은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는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내용적으로 유사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은 총 18개 기관이며, 이중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총 7개 기관(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경북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이 지정되어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함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도로분야)의 세부항목은 기초조사, 수요예측, 시설물 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비용산정, 편익추정으로 구성되어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매우 유사
 - 현재 일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다더라도 총사업비가 500 ~ 2,000억 원이면 추가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함
 - 다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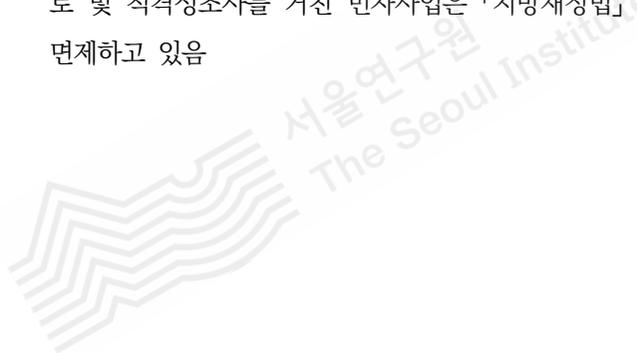
2) 문제점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유사한 제도들의 중복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는 행정적 부담이 크며 사업추진이 지연됨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등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이후, 중앙기관(LIMAC이나 LOMAC)에서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다시 수행
 -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약 8~10개월) +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약 6~8개월)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약 3~4개월) +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약 2~3개월) =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



[그림 4-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총사업비 500~2,000억 원)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약 6~8개월)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약 6~8개월)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약 3~4개월)
- 이로 인해 사업부서는 행정적 부담이 크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분석범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등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별도로 수행할 필요성은 낮음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경제성·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으로 이루어짐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는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민자 적격성(VFM), 민자사업으로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분석을 수행
 -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거친 민자사업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총사업비 2,000억 원 이하의 민간투자사업도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이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면제할 필요

[표 4-6]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개정(안): 유사 중복 제도 개선 관련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_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1) 현행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반면,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의 보고서는 비공개
 - 원칙적으로 공공자료는 공개 대상이며,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제도적으로 비공개 또는 제한 공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의사결정 과정 정보) 정책결정 과정에서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된 경우이며, 공개 시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검토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영정보 보호)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이나 경쟁상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특정 기업의 재무상태, 기술정보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경우
 - (공개 시 업무 지장 정보) 향후 유사한 조사나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전문 공개되나, 일부 민감 정보는 부분 제한 공개되기도 함
 - 민간사업자의 경영정보가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는 비공개
 - 민감 정보가 포함된 일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제한 공개

2) 문제점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임에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분석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이기도 하지만 유사 사업 기획에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이기도 함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유사 사업을 기획하거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수백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없는 것은 정보 공개의 기본 원칙과 배치
 - 타당성조사 보고서 미공개는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 공개의 기본 원칙과 배치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은 블랙박스로 남아있음
 - 시민들이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사업추진의 핵심 판단 근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OECD에서도 공공투자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며,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 OECD는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원칙(Principles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2025)」을 통해 공공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
 - 「공공투자 청렴성 프레임워크(Integrity Framework for Public Investment, 2016)」에서는 공공투자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청렴성의 핵심 요소로 제시
 - 투명성과 책임성 개선은 부패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예산 대비 더 나은 가치(value for money)와 고품질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주장

3)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필요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공개 원칙을 준용하여, 전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명확한 사유를 통한 비공개 또는 제한 공개할 필요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공개 시점은 투자심사가 완료된 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처럼 수수료 약정으로 진행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도,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타당성검토 수행 전문기관과 타당성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 보고서 공개가 명시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처럼 「지방 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보고서 공개를 명시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 사업부서 공무원과 평가 영역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것으로 기대
 -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가 전제되면 사업부서 공무원도 더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
 - 공개를 전제로 한 검토는 전문성을 높이고 부실한 분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공개된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유사 사업을 기획하거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담당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05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 1_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 2_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05.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1_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²²⁾

1) 현행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낙후도 분석 시 서울·부산·인천 등 특별·광역시는 특별·광역시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분석
 - 지역낙후도 분석 시 시·군은 광역자치단체(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시·군) 단위까지 분석하는 반면 특별·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단위만 분석
 - 한국개발연구원(2020)은 ‘지표선정 5원칙’으로 ①PFS-relevant, ②Information-oriented, ③Monotone, ④Area-specific, ⑤Consequence-based indicators를 제시
 - ①PFS-relevant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 영역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
 - ②Information-oriented는 ‘저량(stock)과 유량(flow) 중 의미의 적합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의미
 - ③Monotone은 ‘단조적(monotone)’인 지표를 의미
 - ④Area-specific은 ‘지역 단위에 적합’한 지표를 의미
 - ⑤Consequence-based indicators는 ‘제어변수(control variable)보다 상태변수(state variable)에 해당’하는 지표를 의미
 - 한국개발연구원(2020)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밀접한 지표(원칙 ①)는 지

²²⁾ 해당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서울연구원 등, 2024)를 참고하여 작성

역 단위 적합성 원칙(원칙 ④)에 따라 대부분 구 단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제시

- '예컨대, 서울시는 문화시설 확충 사업(창동아레나 등)의 입지 선정 시, 구(區) 간의 균형발전을 이미 고려'하였다고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낙후도지수는 시·군 간의 자원배분 결정에 활용되므로, 특정 시 내부의 일부 구가 해당 시의 다른 구에 비해 낙후되었다 하더라도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해당 시 전체의 상대적 낙후도가 중요한 판단 근거이어야 한다'고 제시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수혜는 그 영향이 특정 구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수의 최소 단위를 시·군으로 하는 것이 지나치게 넓은 선택이라 볼 수 없다'고 제시



2) 문제점

- 특별·광역시 내 지역 불균형이 크고 전국 평균 대비 낙후된 자치구가 있으나 이를 미고려
 - 강남·강북(서울), 원도심·구도심(인천), 동서(부산, 대전) 등 대부분의 특별·광역시는 자치구 간 격차 문제가 심각
 - 사업의 주요 영향권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광역시 단위로 지역낙후도를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
 - 특별·광역시 사업 중에는 주요 영향권이 특별·광역시 전체가 아니라 특정 자치구 및 인접 자치구(권역)에 국한되는 사업도 있음
 - 낙후된 자치구가 주요 영향권인 사업에 대해, 특별·광역시 단위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사업부서의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특별·광역시 내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는 특별·광역시 내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부적절
 - 한국개발연구원(2020)에서 시청 위임사무만 수행하는 행정구와 구청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구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
 - 구는 크게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와 기초자치단체(시)의 하위 행정구역인 행정구로 구분
 - 자치구는 특별·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 구청장과 구의회를 선출하고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반면,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청이 위임한 사무만을 수행
 - 이처럼 자치권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행정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구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역낙후도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3)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낙후도 분석 시 특별·광역시 사업의 분석단위를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단위까지 분석할 필요
 -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 간 불균형과 자치구의 자치권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단위까지 지역낙후도를 분석할 필요
 - 행정구는 시청 위임사무만 수행하지만 자치구는 구청장, 구의회를 선출하고 고유사무를 수행하므로, 특별·광역시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
 - 통계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이미 많은 지역균형발전자료가 자치구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자료 구득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지역여건이 지속적으로 변동되므로, 지역낙후도 지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할 필요



2_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110

1) 현황

- 많은 사업부서들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를 파악하고자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
 - 사전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비용과 효과, 수요, 입지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업의 상당수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상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거나 상급 부서나 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실시
 - 사전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엔지니어링 회사,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사업부서 예산으로 진행
 -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틀을 준용하여 수행

2) 문제점

-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전 타당성조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 타당성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요건, 분석 방법론 및 절차, 수요·편익·비용 등의 추정 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어, 의뢰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분석 및 결과 해석 과정에서 신뢰성 낮은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음
 - 사전 타당성조사 발주처인 사업부서의 입장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부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효과를 높게 추정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사업부서의 바람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비용은 과소 추정하고 편익 및 효과는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잠재 비용 누락이나 비논리적 편익 발굴 등이 발생
- 이는 공공 자금이 투입된 사전 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줌

3) 개선방안

- 사전 타당성조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결과물을 확보할 필요
 - 사전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편익·비용 등은 통상적인 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보다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정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
 - 의뢰 부서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되 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업체의 업종,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
 - 이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에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전 타당성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학계 및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요·편익·비용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적 타당성조사 전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
 - 현행 법적 타당성조사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발굴·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타당성조사 전반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6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1_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 2_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 투자심사 지원
- 3_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06.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1) 현행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해당 시·도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적격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자체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2025년 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지방자단체의 자체심사 확대
 -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신축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권한 확대
 - 장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우발채무)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 부족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2) 문제점

(1) 시·도 자체심사 대상사업 확대로 자체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필요

-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중앙의뢰심사 사업의 일부가 시·도 자체심사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가 더 정교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필요
 - 특히 행사성 사업은 개정 전에는 30억 원 이상 사업이 중앙의뢰심사였으나 개정 후에는 200억 원 미만의 사업이 시·도 자체심사로 전환
 -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매뉴얼은 일반투자사업 위주로 제시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

[표 6-1]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비 규모별 심사 주체

심사주체 의뢰주체		개정 전			개정 후		
		자체심사	시도의뢰	중앙의뢰	자체심사	시도의뢰	중앙의뢰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문화·체육· 청사	-	20억 원 이상	-	20~60억 원	60억 원 이상	-
	행사	1~3억 원	3~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3억 원	3~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홍보관	3~5억 원	5~30억 원 미만		3~6억 원	60~200억 원 미만	
	우발채무	-	-	전부	20억 원 미만	20~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동협력	20~60억 원 미만	60~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20~60억 원 미만	60~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광역 자치단체 (시·도)	문화·체육, 청사	-	-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00억 원 이상
	행사· 홍보관	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우발채무	-		전부	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공동협력	40~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40~500억 원 미만	-	500억 원 이상

자료: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정리

- 지방재정 투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사업의 신속한 진행 등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 결여로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자체심사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와 투자심사 담당부서, 전문기관 등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

(2) 투자심사 수행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로 객관적 평가 한계

-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는 공공투자관리를 위한 조례를 통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방식, 주요 업무를 명문화
 - 투자심사의 경우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 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
- 조례 제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에 한계
 - 투자심사 기간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기관별로 2~8주로 상이
- 객관적 심사를 위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일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직원은 지방연구원 본원 업무도 겸직하여 독립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
 - 겸직 직원은 본원에서 정책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심사 업무도 병행함으로써 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에 한계

[표 6-2]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관리 조직 현황

(2025년 4월 기준)

구 분	설립조직	센터명	설립시기	공투 조례	민자전문기관
서울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2. 5.	○	○
부산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9.	○	○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2023. 2.	-	-
인천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1.	○	○
광주	광주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	2023. 10.	-	-
울산	울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1.	-	○
경기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8. 9.	○	○
충북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	2012. 2.	○	-
충남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1.	○	-
전북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4. 10.	-	-
전남	전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5.	-	-
경북	경북연구원	공공투자센터	2023.	-	○
경남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5. 2.	○	○
제주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10.	○	-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3) 지역별 상이한 심사체계 및 전문성으로 일관성 및 신뢰성 결여

- 일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여하는 반면, 일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단기간(1~2주)에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수행
 - 일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여하여 사업의 리스크 완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일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1~2주의 단기간에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수행하여 사업의 특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투자심사를 위한 평가지표 및 기준도 지역별로 상이하여 일관되고 객관적인 투자심사에 한계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시 센터별로 인력, 예산 규모의 차이가 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



3) 개선방안

(1)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부여 및 업무 명문화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어 연구와 공공투자 관리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 높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방식, 기능, 조직 구성, 예산 지원,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법적근거 마련 및 객관적 투자심사를 위한 기반 조성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이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명문화하여, 자체심사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안정적인 독립적인 기능 보장
- 기능 확대 시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 (방안 1)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의 실무투자심사 위원회 구성 부분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를 추가

[표 6-3]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개정(안): 실무심사 관련

현 행	개 정 (안)
가. 실무심사 절차 (주관) 투자심사 담당 부서 (심사자)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심사부서,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적의 선정	가. 실무심사 절차 (주관) 투자심사 담당 부서 (심사자)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심사부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 등으로 적의 선정

- (방안 2)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의 심사 안건 교부 부분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견서 작성 요청'을 명문화

[표 6-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개정(안): 심사안건 관련

현 행	개 정 (안)
(심사안건 교부) 위원회 심사 전에 안건을 전문 분야 별로 해당위원에게 배분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심사안건 교부) 위원회 심사 전에 안건을 전문 분야 별로 해당위원에게 배분하고 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견서 작성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건 사업당 2인 이상에게 배분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 안건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전 투자심사 담당부서로 전달

- (방안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을 명문화

[표 6-5] 「지방재정 투자심사 규칙」 개정(안) : 투자심사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중략	(4항 신설)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④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투자심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운영 기준에서 정한다.

(2)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투자심사위원회 참여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의 투자심사위원회 참여를 명문화할 필요
 - 재정투자 사업의 효과성,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가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할 필요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의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 참여를 명문화

[표 6-6]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개정(안): 위원회 구성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성)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함 -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 참여 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구성)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함 -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하되, 주민 참여 예산위원을 1명 이상,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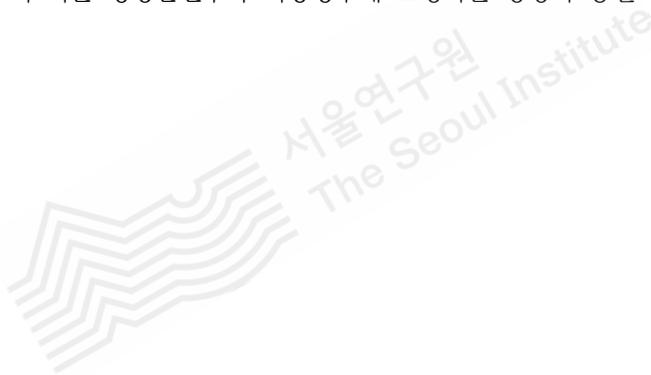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는 투자심사 전문가들이 많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_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 투자심사 지원

1) 현황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투자심사 의뢰 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사·검증 업무를 수행
 - 투자심사에 접수된 사업에 대해 심사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및 운영수지, 사업내용 및 추진 절차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종합검토를 수행하여 검토의견서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제공
 - 투자심사 안전에 대해 사업부서 및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보완자료 등을 요청하는 실무심사 회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조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
 - 의사결정 주체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회차별로 다수의 사업을 검토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거나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실제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이 대부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또는 재검토 지적사항에 반영되고 있으며,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심사의뢰서가 상당 부분 보완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전후 사업 승인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투자심사 의뢰서가 개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절감 성과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배석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 또한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를 수행
 - 의뢰서에 대한 단순 검토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전검토를 통한 추가자료 및 의뢰서 보완 작성 요청, 사업부서 미팅 및 실무심사, 현장조사, 사업비 재산정,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에서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 중
- 이러한 역할을 통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장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투자심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에 요청하는 방향과 동일



2) 문제점

(1) 중앙투자심사 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제한적

- 중앙투자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업의 투자 여부를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는 절차
-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사업의 재원 투입 주체(지방자치단체)와 심사 주체(중앙정부)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용을 제한
 - 광역자치단체 전액 자체재원인 청사, 문화·체육시설의 신축사업 역시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중앙투자심사는 중앙정부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어 지역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의 의뢰서 및 추가 제출자료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지역 전문가의 분석·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진행
- 반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적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투자심사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공식적 역할은 전무
 - 일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부서나 투자심사 관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 사전 지원업무를 수행

(2) 기초자치단체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미흡

-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과율도 매우 높은 상황
 - 기초자치단체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은 이전재원이 포함된 20~60억 원 일반사업, 20억 원 이상의 전액 자체재원 사업, 20~60억 원 규모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중앙투자심사나 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보다 기초자치단체 투자심사의 심사 건수가 더 많음
 - 기초자치단체 투자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는 경우도 많으며, 통과율도 95% 이상



3) 개선방안

(1) 중앙투자심사 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활용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전문가 역량을 고려하여 중앙투자심사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과 역할을 식별하고 이를 운영할 필요
 - 해당 지역사업에 대해 지역 전문기관인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기초지자체의 중앙투자심사 의뢰 건의 경우 타당성조사 및 사전검토 수행기관의 범위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확대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앙투자심사 참여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을 포함한 지역사업 투자심사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 투자심사 관련 직무교육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투자심사 관련 사업부서, 심사부서, 전문기관 등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함께 투자심사 관련 사업부서, 심사부서, 전문기관, 투자심사위원회 등을 위해 투자심사 전 과정에 대한 제도 안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자원조달 방안,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
 -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의 실무 적용성을 향상시킬 필요

3_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1) 현황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어, 각 지방연구원 내 독립 조직으로 운영 중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16개 지방연구원 중 14개 지방연구원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기능은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검증),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 등임
 -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투자심사 의뢰 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사·검증 업무를 핵심적으로 수행
 -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타당성 조사·분석 연구를 수행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사전컨설팅,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투자심사 실무를 적극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
- 그러나 지방재정과 관련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재한 상황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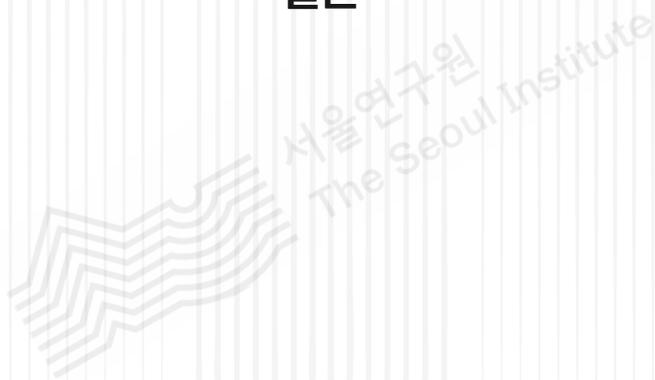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창구가 없어 현장 전문성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각종 투자사업의 사전컨설팅과 타당성 검토·조사·검증 등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과 행정적 비효율성 등을 발견
 - 2024년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가 출범하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들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는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존재하지 않음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창구가 없어 현장 기반의 실무 경험과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만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조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이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위상과 중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투자사업에 대한 중립적·객관적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만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운영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등 자율성 및 중립성 확보에 한계

3)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와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간 정례 협의 체계 구축 필요
 - 행정안전부와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제도 운용상의 애로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상시 전달하고 조율할 필요
 - 연 2회 이상의 정기 협의를 통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도 개선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투자심사 운영과 타당성조사 기준 등에 반영할 필요
 - 검토 사례 및 매뉴얼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의 정례 협의 체계를 통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무 경험이 제도에 반영되어, 현장 중심의 실효적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제도의 수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중앙정부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정례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나 연구비를 지원할 필요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막는 등 행정안전부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 목적과 주어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지방투자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을 지금보다 일정 수준 보강할 필요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나 연구비를 지원할 필요

07

결론



1_제도 개선방안

2_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활용방안

07 결론

1_제도 개선방안

-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14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에 대해 검토

[표 7-1] 제도별 개선방안

제도	개선방안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1-1. 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1-2.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
	1-3.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1-4.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2.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2-1.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2-2.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2-3.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2-4. 유사 중복 제도 개선
	2-5. 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 공개
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3-1.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3-2.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4.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4-1.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4-2.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
	4-3.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 전문가 및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
 - 총 14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제도 간 연계성,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
 - 도출된 개선방안은 개선 시급성,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기간에 따라 구분 및 제시

1) 단기 제도 개선방안

- 제도 개선의 시급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 제도 개선방안으로 총 7개 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
 - 행정 부담 완화, 절차 간 중복 해소, 심사 기준의 실효성 제고 등 단기적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선정
 - (1순위,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의 투자심사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 강화와 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지원체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2순위,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정기적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3순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전액 자체재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4순위,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간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재정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5순위,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주민의 알 권리 강화, 정책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6순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재정 규모와 사업 특성에 따

른 기준을 차등화하고 공사비 기준 및 간이 조사를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7순위,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 조정)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를 통해 중복 절차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심사체계의 일관성과 속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 단기 제도 개선은 운영체계 정비부터 기준 표준화 및 절차 간소화까지 단계적 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단기간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

[표 7-2] 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도출

순위	관련 제도	내용
1순위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2순위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3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4순위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5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6순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7순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 조정

2)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 법령 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구조적 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을 선정
 -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 재정투입 주체와 심사 주체를 일치시켜 사업계획 및 심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관리대상 확대, 데이터 연계·자동화, 평가결과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중기적으로는 정량분석 위주가 아닌 별도의 평가체계를 적용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소규모에 적합한 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
 -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특별·광역시 사업의 분석단위를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단위로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지표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
 -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통해 타당성조사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전문가 역량을 중앙투자심사 및 투자심사 관련 직무교육 등에 활용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중·장기 개선은 단기 개선의 성과를 제도적 기반으로 확장하여,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체계와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2_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활용방안

134

(1) 연구의 시사점

- 이 연구는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운용의 합리화를 위해 현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방재정사업 심사체계의 복잡성과 중복 절차 등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14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제도별 개선 필요성의 체계적 구조화를 시도
- 도출된 14개 개선방안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효과가 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7개 제도 개선방안을 선정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핵심 시사점을 도출

①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 효율화 및 재정 자율성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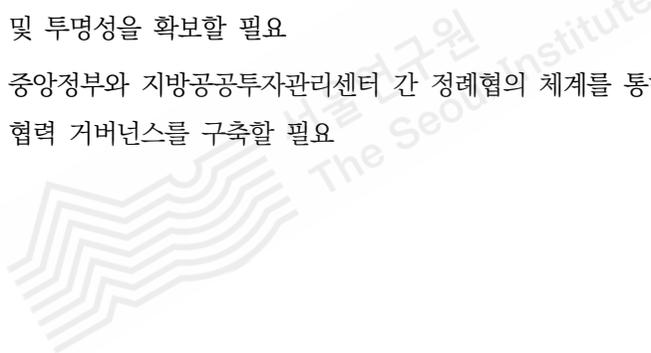
- 제도 간 중복 해소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 등을 방지할 필요
 - 「지방재정법」과 타 법령 간의 타당성 검토 절차 중복 문제를 해소하여, 유사한 검토의 반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
 - 타당성검토 절차를 단계적으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 일정의 예측가능성과 심사 과정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
-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구분하여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심사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

②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 고도화를 통해 심사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사업의 유형·규모·성격(예: 행사성, 문화·복지·환경 등)에 따라 맞춤형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정량적 경제성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계량적 편익을 반영할 수 있는 다차원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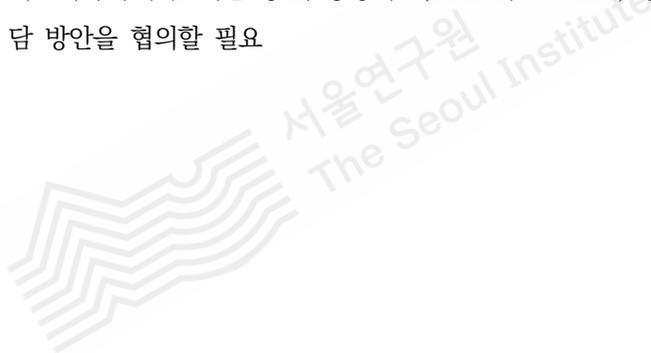
③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장 경험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투자심사에 반영될 경우, 현장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사례 공유 및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심사 품질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문성 기반의 피드백 체계를 강화할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
 -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과 기준을 총괄하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 검토를 수행하는 분권형 협력체제로 전환할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정보공유를 통해 타당성조사 보고서, 심사결과, 사후평가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정례협의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



(2) 향후 연구 활용방안

- 이 연구는 지방공공투자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회의 공동 제안서 또는 정책건의서 작성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유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의견으로 제출
- 후속 연구를 통해 제도 간 연계 순서 및 시행단계별 이행전략을 보다 구체화 필요
 - 시행시기와 적용범위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
 - 기초지자체 투심 지원 방안, 중앙기관(LIMAC, LOMAC) 등과 역할 분담 방안을 협의할 필요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4, 「2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이슈와 논점 제2104호.
- 국회예산정책처, 2024, NABO Focus 제73호.
- 나라살림연구소, 2024, 나라살림브리핑 제374호.
- 박병희, 2016,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성과와 개선과제', 『지방재정』 2016(4), p.104~119.
- 서울연구원, 2020,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 _____, 2025, 「서울시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 연구」.
- _____, 2025,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항목 재구조화 연구」.
-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2024,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지수 개발」.
- 한국개발연구원, 2020,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
- _____, 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연구」.
- _____, 2024, 「202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22, 「202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_____, 2023, 「2023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 OECD, 2016, Integrity Framework for Public Investment.
- _____, 2016, OECD Principles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https://pimac.kdi.re.kr/about/validity.jsp>(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s://limac.krila.re.kr>(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lofin365.go.kr>(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nhancing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 Public Investment

Dong-Guen Kim·Jae-Hong Joo·Han-na Eh·Yoon-Jung Oh·Byung-suk Kim·
Ho-young Lee·Chan-woon Park·Dae-hyun Seo·Su-bin Sim·Sang-eon Seo·
Kwang-seok Kim·Yun-seon Park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have been implemented over the past 30 years. However, the system governing loc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remains largely centralized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addition, several inefficiencies persist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such as ambiguous review criteria, redundant procedures, and the absence of an effective post-evaluation mechanism. These problems stem from structural factors such as a centralized review and management system, the limited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inconsistencies in evaluation standards across projects. Although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o conduct investment reviews has been increased, the corresponding legal basis, financial resources, and personnel support require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 capacity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remain insufficient. Consequently, concerns are growing over a possible decline in local fiscal soundnes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hance lo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while ensuring that on-site expertise is adequately reflected in institutional operations.

140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four major systems: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the Feasibility Study under the Local Finance Ac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Pre-Feasibility Study, and the redefinition of the role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To this e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and case studies on investment reviews and feasibility analyses were conducted in a systematic manner. In addition,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related institutions.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intent, operational status, and procedural structures of each system, this study identified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rom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reform measures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overall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fou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identified: adjustment of overlapping investment review procedures, revision of review criteria and simplification of project classifications, exclusion of public property values from the total project cost, and advancement of fiscal investment project history management. For the Feasibility Study System under the Local Finance Act, f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expansion of designated professional institutions for feasibility studies, adjustment of project thresholds for feasibility studies,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for economic analysis, improvement of overlapping or redunda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disclosure of feasibility study reports. Regarding the Preliminary and Pre-Feasibility Study Systems, two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enhancement of the regional underdevelopment index used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nd 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criteria for pre-feasibility studies. Finally, for the role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identified: systematization and advancement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operations, support for centr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conducting investment reviews,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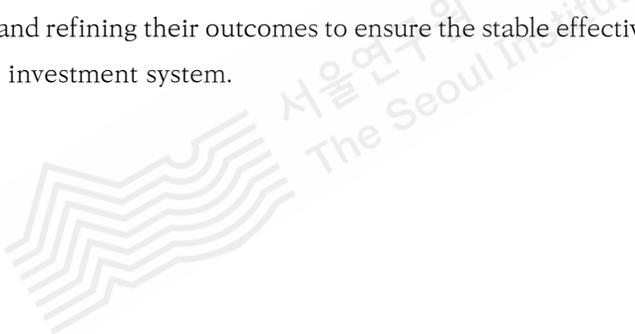
The fourtee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classified into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measure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urgency,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each reform. Seven short-term measures were selected from those expected to generate immediate policy effects, such as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eliminating procedural redundancie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review criteria

Based on the prioritization derived from consultations with practitioners at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nationwide, the highest priority was assigned to “Systematization and Advancement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Operations,” which institutionalizes the participation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experts in investment review committees. The second priority was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which aims to establish regular consultation channels. The third priority was “Expansion of Designated Professional Institutions for Feasibility Studies,” whereby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conduct feasibility studies for projects funded entirely by local governments. The fourth and fifth priorities were “Exclusion of Appraised Public Property Values from the Total Project Cost” and “Disclosure of Feasibility Study Reports,” respectively. The sixth priority was “Adjustment of Project Thresholds for Feasibility Studies,” which differentiates thresholds based on fiscal capacity and project characteristics and introduces construction cost criteria and simplified reviews. Finally, the seventh priority was “Adjustment of Overlapping Investment Review Procedures”, which exempts projects that have already undergone proposal review and eligibility assessment by the professional institution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from the feasibility study and investment review requirements under the Local Finance Act.

The following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practical effect of system

142

improvement in the future. Firs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hen revising relevant guidelines, thereby strengthen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herence of the system. In addition, the results should serve as supporting evidence for joint proposal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repared by the Nationwide Association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enabling the aggregation and delivery of region-specific reform need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seminate the findings to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across the country and to the Association of Governors and Mayors, gather feedback from on-site practitioners, and relay these insights to central government bodies—such a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to enhance the policy impact and practical acceptability of institutional reforms. Finally,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gradually according to their priority levels, while continuously monitoring and refining their outcomes to ensure the stable effectiveness of the local public investment system.



서울연구원
The Seoul Research Institute

01 Research Overview

- 1_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Study
- 2_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02 Overview of Local Fiscal-Related Systems

- 1_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 2_Feasibility Study System under the Local Finance Act
- 3_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 4_Status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03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 1_Adjustment of Overlapping Investment Review Procedures
- 2_Revision of Review Criteria and Simplification of Project Classifications
- 3_Exclusion of Appraised Public Property Values from the Total Project Cost
- 4_Advancement of Fiscal Investment Project History Management

04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Feasibility Study System under the Local Finance Act

- 1_Expansion of Designated Professional Institutions for Feasibility Studies
- 2_Adjustment of Project Thresholds for Feasibility Studies
- 3_Development of Methodologies for Economic Analysis
- 4_Improvement of Overlapping or Redunda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 5_Disclosure of Feasibility Study Reports

05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Preliminary and Pre-Feasibility Study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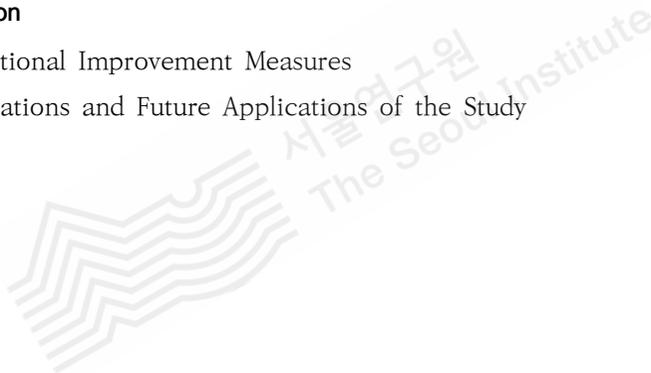
- 1_Enhancement of the Regional Underdevelopment Index Used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 2_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Criteria for Pre-Feasibility Studies

06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Redefining the Role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 1_Systematization and Advancement of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Operations
- 2_Support for Centr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Conducting Investment Reviews
- 3_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Loca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s

07 Conclusion

- 1_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 2_Implications and Future Applications of the Study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 2025-CR-02

발행인 오 균

발행일 2026년 1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7552-061-5 95320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